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0965-10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규제합리화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0965-10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규제합리화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발간사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0년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경기도에서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합리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은 민생불편 해소, 기업애로 해소, 규제샌드박스, 지역발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과제별 규제개선 배경과 개선내용, 효과를 알기 쉽게 풀어내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순회 간담회와 민생규제 도민공모전을 통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눈에 띄게 감축하였고, 비행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등은 규제로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투자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성장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신산업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규제샌드박스’를 밀착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중앙-도-시군의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민께서 규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을 통하여 규제합리화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경기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월

경기도지사 이기영

목차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PART 1

민생불편 해소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9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11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13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15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19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21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23



PART 2

기업애로 해소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2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31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34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36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38



PART 3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43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저탄소 캠핑장 조성	44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46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50
친환경 소재의 글램핑용 돔텐트에서 안락한 야영을 즐기다	52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입을 위한 101번의 프로포즈	54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경기도와 함께 규제의 문턱을 넘다	58
기사회생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60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64



PART 4

지역발전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69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73
관광안내 '챗봇'이 도와드려요	76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	78

민생불편 해소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9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11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13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15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19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21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23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개선배경

〈수원 권선지구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개교: '23.3월)〉

- 사업규모 : 곡반3초·중학교, 학교복합화(체육관, 대강당, 수영장 등 포함) 시설
- 사 업 비 : 721억원(국비 40, 시비 235, 기타 446 / 복합화 275, 학교 216, 부지 230)

※ 학교복합시설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학교시설

-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
 - 중복투자심사 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향상 부진, 집단민원 지속 발생, 관계기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투자심사 일원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지방재정 투입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투자심사 이원화(지자체→행정안전부, 교육청→교육부)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 예상	- 행정안전부 &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 ⇒ 최대 9개월 기간 단축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입 학교시설 건립 관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 일부 수용으로 화신
 - 법령 또는 지침(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및 시행(9월)
- 경기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조기 개정 건의 → 조기개정 공식화(6월)



• 개선효과

-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보도자료

신사-비리 **보도자료**

2020년 5월 28일(목) 오전 8: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책 개선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경기지사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

- 행정안전부(윤관 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편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교부 내 세력권 관리대상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지원하고, 민공 우선협동 투자를 우선 하는 사업
- 자치단체의 원안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을 완화(9년→4년, 정지심사 확(80%→40%) 등 투자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의 협력을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편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2020.6.9부터 시행)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의 교육부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 총 42건이 기존 지자체 202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 이상 심사 필요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0. 5. 27(수) 배포

보도일 2020. 5. 28(목) **보도부처** 교육부 **주요 키워드** 내(내)외 대학(중)교육진흥사업 39(29) 2500억 투자 가능

담당과 지방교육정책과 **담당자** 김 철 **연락처** 02-310-4199(사무관) 02-310-4520(주무관)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윤관 전)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마련한 경우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공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새로운 경기 **보도자료**

2020. 6. 2(화) 배포

보도일 2020. 6. 2(화) **보도부처** 경기도

대상 2 **대상** 0 **대상** 0

대상 2020. 6. 2(화) **대상** 02:00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와 최대 9개월 단축
- 도의 규제합리화 조기 개칭 논의 정부 수용

○ 행정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과 투자심사 한 번만 실시
- 도, 광역 공동투자심사 심판회 등 규제합리화 권역
- 서울 학교복합시설 추진 위해 경기청 개칭
○ 중복투자심사 간소화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칭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한국지정연구원(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투자심사로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부담되는 학교복합시설 건설 건립의 관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심판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105)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억울한 소매인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선배경

- 현행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으로 개선이 필요함

〈피해사례〉 편의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으나, 경찰조사 시 위조한 신분증으로 밝혀져 소매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음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건의

※ 관련규정 :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2개월간, 2차 3개월간 영업정지	-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 추진과정

- 청소년 담배 판매(신분증 위조 등) 과도한 행정처분 규제 인지·검토 : '19. 4월 ~ 9월
-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담배사업법 개정 건의 : '19. 9. 10.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중장기 검토' 의견 회신 : '19. 10. 2.
- 수퍼마켓 소상공인 청소년 담배 판매 규제애로 현장 조사 : '19. 10. 16.
- 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 '19. 10. 30.
 - 피해마트 방문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 「민관합동 민생규제협의체」 개최하여 청소년 담배구입 방지 위한 법률 개정 요청 (국무조정실 등 참석) : '19. 11. 26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수용' 의견 회신 : '20. 3. 24.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개정 : '20. 3. 31 / '20. 6. 24

• 개선효과

- 편의점 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및 불필요한 행정소송·심판 소요비용 절감
-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자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져 청소년 탈선 방지 효과



• 개정법령(담배사업법 제17조)

개 선 전	개 선 후
<p>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p>	<p>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7.1]</p>

〈추진부서〉 경기도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894)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공장유도화지역내 골재공장 불승인〉

• 추진배경

- 공장유도화지역에 골재공장 승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과 생명 안전에 위협을 받는 주민 보호 필요
 - 공장유도화지역* 내 부지면적 13,170㎡, 파쇄·분쇄기 400마력 5대, 덩크25톤 600회 운행분량의 골재 분쇄·파쇄공장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작물 오염, 마을길 포화, 농업(생업), 어린이집 및 사찰 등 생존권 위협한다며 주민 465명 집단 민원 제기
 - * 공장유도화지역이란?
 - 공장 등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 목적으로 조례(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유도지역임
 - 해당기준(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및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유도화 지역 허용 -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피해 유발업종(골재공장)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유도화 지역 폐지 - 계획관리지역내 환경피해 유발업종에 골재공장을 제한업종으로 추가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항소로 3년에 걸친 행정소송 최종 승소('20.3)
- 김포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제외조항(습식은 제외한다) 삭제 개정 건의('20.1)

• 개선효과

- 정온시설(종교시설, 어린이집, 농가주택 등)의 생명·안전 보호와 관련법 및 제도 개선으로 시민 환경피해 근원적 차단 기반 마련



규제 완화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자



김포시 기업지원과
정진호
(031-980-2894)

이번 규제합리화경진대회는 기존의 규제완화, 규제개혁과 다른 점이 있다. 기존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대회였다면, 올해는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규제합리화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의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무분별한 공장의 난립으로 난개발지수 1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난개발이 심한 일부 지역주민의 질병발생률이 높게 조사되기도 하였다.

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사람을 위해 필요한 법이 오히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자이다. 법령을 집행할 때 기계적인 적용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규제완화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묵묵히 꼭 필요한 규제를 강화해왔던 업무가 발탁된 사례이다. 이번 사례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공직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추진부서〉 경기도 부천시 재개발과(032-625-3770)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민·관 협력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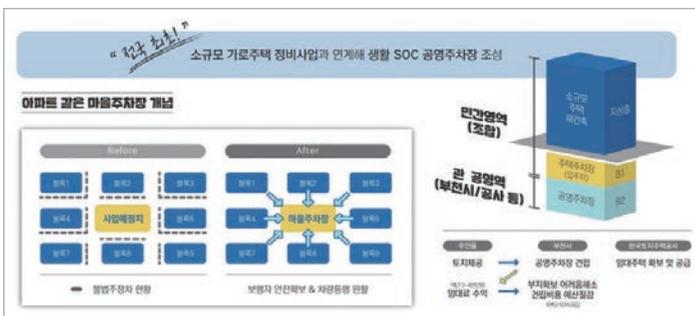
- 부천시의 원도심은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후 조성된 저층의 노후 주거지로 주거밀도가 높고 공원, 주차장 등 기초인프라가 부족하여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시급함
- 특히 원도심의 불법 주차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공간 부족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도심의 전통시장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복합 쇼핑몰과의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

▶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 불편해소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주택정비사업추진 ⇒ 구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 주택정비사업+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물로 건립 ⇒ 구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 인근 지역 주차난 해결 ⇒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0.24.)
 -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도입」으로 민간소유건물에 공영주차장 건립 시 국도비 지원 가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9.11.28.)
 - ▶ 정비기반시설(주차장) 확대를 위한 가로구역면적 확대 (구역면적확대 1만㎡→1.3만㎡(조례위임), 2만㎡(심의)허용)



• 추진과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 3('19.2.12./'19.4.9./'19.9.25.), 국회 토론회 개최('19.3.12.), 전문가와 법령 개정 회의('19.2.26.) 등 실시
- 전국 최초 민·관 공동사업 추진으로 변호사 자문 4회,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2회를 실시하여 소유권 및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
- 사업지 발굴을 위해 조합원, 임원 및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지 선정
- 부천시-부천여월LH조합-LH와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19.4.9.) 및 세부협약('20.8.21.)을 통해 공영주차장 85면 설치 및 임대주택 29호 건립 추진
- 부천시-삼협연립3차 조합과 제2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협약('19.8.5.) 및 세부협약('20.7.28.)을 통해 인근 역곡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 50면 설치 추진
- '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국도비 33.1억 및 '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국도비 19.1억원 확보

• 개선효과

- 국내 최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공 신(新)공유경제 모델 창출
- 원도심 등 낙후지역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
- 단지 주변 불법주차 해소로 교통 흐름 원활 및 보행공간 확보로 주거환경 개선
-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로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조감도



〈부천여월LH〉



〈삼협연립3차〉

• 보도자료

경인매일

HOME > 경기뉴스 > 경기서남부

부천시,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세부협약 체결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6.24 11:39



부천시가 시청 만남실에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세부협약을 체결하며 제1호 마을주차장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사진=부천시)

(부천=김장운기자)부천시가 시청 만남실에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세부협약을 체결하며 제1호 마을주차장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번 협약은 작년 4월 체결한 기본 협약에 이어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방극욱)·한국토지주택공사(LH)·시(市)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부 협약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방극욱 조합장, 장중우 LH인천지역본부장이 참석하여 역할 분담, 사업비 부담·지급·정산 방법, 임대료 산정·지급 방법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했다.

전국 최초 민간·공이 협력하여 조성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제1호는 공동주택(112세대), 임대주택(29세대) 및 공영주차장(85면)을 포함한 복합시설물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하2층 부분의 토지를 제공하고, LH는 정비조합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부담하며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은 여월동 9-28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있다. 주차장 완공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여월LH참여형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6억 중 33.1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세부협약은 원도심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기능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이라며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 사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운 기자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민관 협력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평택시 건축허가과
권 오 철
(032-625-377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사업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신 전임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살고자 하지만 각자의 이유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는 전국 2위의 인구밀도를 자랑하지만 중·상동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은 주택이 노후되고 기초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차장 부족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부천시는 법 신설(2018년 이후) 이후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 사업 80%인 160여 구역이 진행되고 있어 정비사업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전국 최초 민-관 공동건립 사업인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 어려운 사업을 왜 하는지? 굳이 민간이랑 공동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등 많은 의문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렇게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고 안주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축허가과(031-8024-4160)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건축인허가 1회 협의 후 재협의 생략, 새움터 활성화〉

• 개선배경

- 건축인·허가 신청 시 상시적 보완 및 재협의, 협의부서 지연회신, 담당자 별 업무편차 등 원인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민원인 불편 고조

▶ 건축인허가 절차 단축 및 매뉴얼 제작으로 신속·정확 업무처리 가능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건축부서에서 설계자와 협의부서 간 전달 역할 수행으로 보완요구 시 재협의(문서 발송)요청이 있어야 처리 가능 (설계자 ↔ 건축부서 ↔ 협의부서)	(절차단축) 재협의 절차 생략(8단계 → 5단계로 단축) In-out창구 통합, 설계자 ↔ 협의부서 직접 연락하여 재협의 없이 결과 회신
○ 건축복합민원의 협의부서가 새움터에 협의 의견을 입력하기 전까지 건축부서 및 설계자는 진행상황을 모름	(보완감축) 각 부서 새움터 상 협의 간에 최초 검토, 보완요청, 최종결과 입력 등 진행과정을 공유하여 소통 및 투명성 제고
○ 근무경력, 법령해석 등 담당자별 업무편차 존재	(편차감축) 주요 체크리스트 및 반복 보완사항 등을 기재하여 건축 인허가 매뉴얼 제작,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실현

• 개선효과

- 건축허가 소요일수 단축 ('18) 57일 → ('19) 26일 → ('20) 22일
- 보완 요구 횟수 감소 ('18) 1.81회 → ('19) 1.35회 → ('20) 0.98회

○ 건축인허가 프로세스 개선(8단계→5단계)



○ 세움터 활용(진행사항 공유)

설계자	건축허가·신고	세움터
건축부서	인허가 관련 협의부서 협의 요청	8시간 이내
협의부서	① 보완사항 설계자에 직접 연락, 세움터 입력	8시간 이내
건축부서	② 보완사항 취합하여 총괄 보완사항 입력	5일 이내
설계자	③ 보완사항 제출(건축부서 재협의 문서 없이)	보완기한 내
협의부서	④ 처리가능, 조건부처리, 불가 중 택1 결과 회신	처리기한 내
건축부서	건축허가·신고 처리 / 법령위반사항 설계자 행정조치	협의 완료 후 1일 이내



경기도 평택시 건축허가과 **조영주** (031-8024-4160)

직원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낸, 신속 행정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은 주관부서인 건축허가과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러 직원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주관부서, 협의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462)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 절차 간소화〉

• 개선배경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개요〉

- 내 용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대 4년) 지원
- 대 상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신용 1~9등급(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중인 자, 면책·파산 후 5년 미경과자 등 제외)
- 추진방법 : 道-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간 3자 협약을 통한 지원

- 신청자는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이상 소요됨
 - 신청자격유형 중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경기도에서 발급한 추천서가 없더라도 농협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이자지원 대상 여부 판단 가능
 - ⇒ 지원 절차 간소화(국민·영구임대주택)를 통해 기간 단축 및 신청인의 편의 증진 필요

〈기존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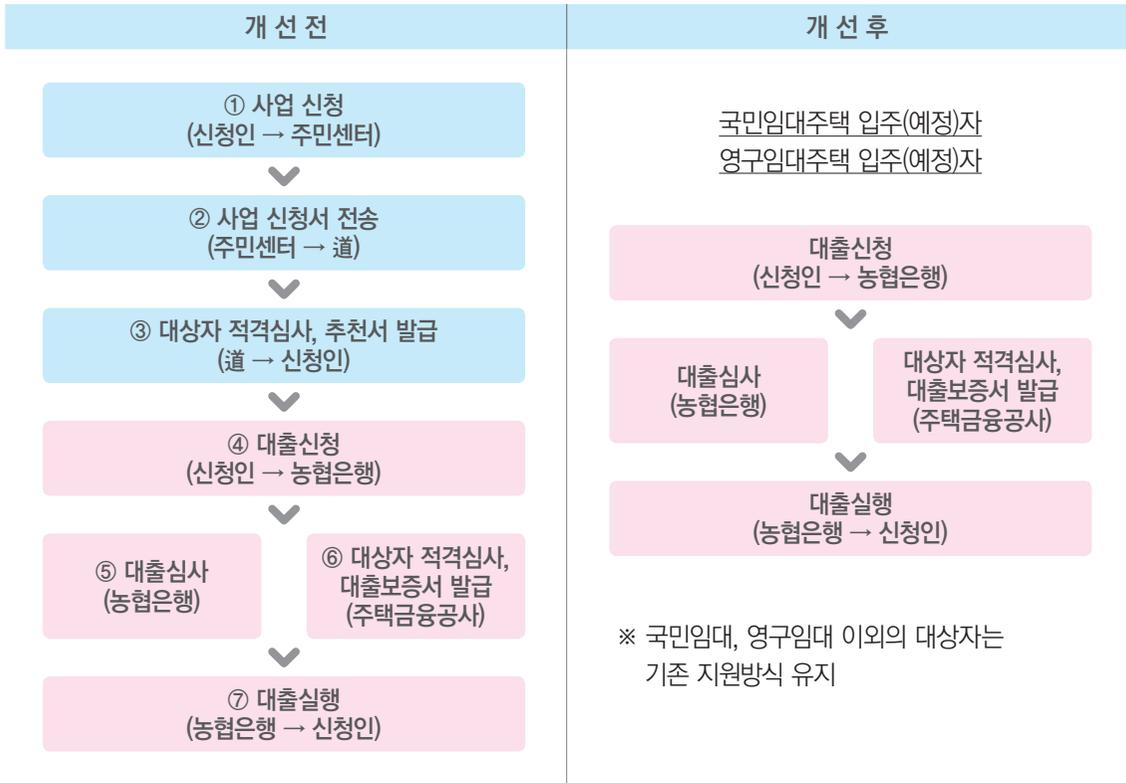
- ① 사업신청(신청자→주민센터), ② 신청서 전송(주민센터→道), ③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道→신청자), ④ 대출신청(신청자→농협은행), ⑤ 대출심사(농협은행), ⑥ 보증서 발급(주택금융공사), ⑦ 대출실행

▶ 사업 대상자 중 축소할 수 있는 범위 내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개선내용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한해 ①~④단계 절차(경기도 추천서 발급 절차) 생략
 - (기존)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소요
 - (변경) 사업대상자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道の 추천서 발급 절차를 생략
 - ▶ 신청~대출실행까지 약 5~10일이 소요, 논스톱 대출 상담 가능

· 개선내용



· 개선효과

- (기간 단축)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신속 처리 가능(20일 소요 → 5~10일 소요)
- (효율성 향상) 은행에서 바로 상담 및 대출 신청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



〈추진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031-828-2931)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 개선배경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분리해야 영업 신고 가능함
- 쇼인쇼п(shop in shop)형태로 운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 타 업종과 공중위생영업을 동시에 신고(미용업 공동 사용 제외)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 설치 또는 방·벽·층 등으로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된 경우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공사비 발생 등 영업주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만 야기

▶ 현실에 맞지 않는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건의

〈미용업 현황〉

- 미용업은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0% 이상 차지하며, 전체 미용업의 22%가 경기도에 위치
- 경기도 내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는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6% 이상
- 의정부시 공중위생영업소 2천여개 중 미용업은 1천 4백여개로 70% 이상 비중 차지

※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기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는 분리되어야 함	-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는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함 →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장소 구분

• 추진과정

- 의정부시는 우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를 개최, 해당 건의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추진
-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고 합동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

-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분리' 규정을 '구획이나 구분'으로 완화하도록 개정 ('19.12.31.)

• 개선효과

- 흡인습 등을 포함한 별도의 분리 없이 구획 또는 구분만으로 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확대로 일자리 창출 가능 및 영업주의 편의 도모
- 시민의 편의증진과 수요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흡인습 매장 증가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신고 건수 증가
- 기존 벽이나 방으로 구분되어 있던 공간에 다른 사업자 입점 시 기존 설비 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폐기물 처리 등 낭비 절감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적 확대 적용되어 많은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파급효과 실현



〈옷가게 내 커튼으로 구획한 네일숍〉
영업신고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영업이 불가함



〈미용실 내 가발판매〉
구획만으로 미용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

기업애로 해소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2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31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34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36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38

〈추진부서〉 경기도 수원시 법무담당관(031-228-2740)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준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 개선배경

-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민, 기업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정

▶ 현장에서 목소리를 청취하고 답을 찾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개선내용

① 전국 최초! 수원일반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

개 선 전	개 선 후
- 지정·관리권자 이원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1블록 경기도지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3블록 수원시장</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2블록 경기도지사</div> </div>	- 지정·관리권자 통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80%;">1,2,3블록 수원시장</div>
- 1·2블록 경기도 승인절차 기업민원처리 : 97일	- 기업 민원처리기간 : 4일 *기업민원처리 93일 단축

- 2017년 5월 수원산업단지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시 건의 → 2018년 산업집적법 개정추진(실패)
 → 2019년 1월·2월 산업단지 지정권·관리권 통합 가능 여부 질의(가능회신) → 2019년 5월 경기도와 협의 추진 → 2019년 10월 수원산업단지 ①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관리 기본 계획(변경) 고시로 지정권·관리권 통합완료

② 벤처기업 유효기간 확대

개 선 전	개 선 후
- 2년	- 3년 유효기간 1년 연장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 절감

* 벤처기업확인제도?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

- 2017년 4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와의 현장 토론회 시 건의 → 2017년 7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건의 → 2019년 관련 규정 개정사항 수시 확인 및 요구 → 2020년 5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완료

③ 드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개 선 전	개 선 후
- 드론비행자격자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 제외 - 1인 및 소규모 기업 대표자는 연구, 생산 활동을 함께 해 소규모 기업 상황을 반영 못함	- 드론비행자격자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 포함 - 자격증 소지한 직원 채용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애로 해소

- 2019년 2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시 건의 → 2019년 3월 경기도, 국무조정실에 건의 → 2019년 7월 중기부 검토결과 회신(수용) → 2020년 3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 기준 고시

④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개 선 전	개 선 후
- 기업부설연구소 칸막이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구공간 30㎡이하	- 기업부설연구소 칸막이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구공간 50㎡이하

- 2019년 4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시 건의 → 2019년 4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건의 → 2019년 10월 과기부 검토결과 회신(수용) → 2019년 12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 준다.

<상상이 현실로, 꿈꾸는 적극행정>



수원시 법무담당관
박 명 희
(031-228-2739)

내실 있고 체계적 협력으로 규제애로 적극 해결하다

염태영 시장님 역점시책인 수원시 규제합리화 적극행정은 시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 개혁 토론회(2014~2018 26회)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2018~2019 83회)를 2014년부터 109회 운영하여 개선규제 229건을 관련부서, 중앙부처에 건의 협력하여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는 5년간 규제개혁 발자취 규제개선 우수사례 70건을 담은 성과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과 공유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다

기업과 현장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성장 지원과 벤처기업, 드론, 부설연구소 등 기술혁신분야 규제애로 해소로 기업 투자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4회를 운영하여 6건 규제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꿈꾸는 적극행정 다짐하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일생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장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과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이 개선·해결될 때마다 공직생활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규제혁신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규제개혁 꿈꾸며 적극행정을 위하여 끝임 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상의 기쁨! 모두와 함께 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오산시 지역경제과(031-8036-756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LH관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인하 추진〉

• 개선배경

-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내수 및 수출이 막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극복을 위해 무급 휴직 등 일자리 불안까지 확산됨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기업의 경우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임대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기준

▶ 임대기업의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인하 예외요건 - ① 산업침체, ② 고용여건 악화, ③ 재난 등이 발생하여 특별지역으로 지정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인하 예외요건 - ① 산업침체, ② 고용여건 악화, ③ 재난 등이 발생하여 특별지역으로 지정선포 - 특별지역 지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간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

- 가장2산업단지 임대기업(21개 기업) 임대료 인하

• 추진과정

- 2020.03.23. : 산업단지 임대기업 임대료 인하 건의(오산시 ⇒ 경기도 산업정책과)
- 2020.08.11.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국토교통부)

• 개선효과

- 인하율 및 기간 : 6개월간 25% 인하('20.7.1.부터 적용)
- 경기도내 3개지구 31필지 임대료 인하 : 31필지, 573백만원 인하(오산시 27필지, 448백만원)

붙임 1) 관련법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개 선 전	개 선 후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p> <p>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p> <p>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p> <p>다.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포한 경우</p> <p>2. 임차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p>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p> <p>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p> <p>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p> <p>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p> <p>라.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포한 경우</p> <p>2.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p>

개선 전	개 선 후
	<p>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 관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붙임 2)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 글자크기 | 음간격 | 인쇄하기 | 취소

LH 임대산단' 임대료 6개월 인하...경기도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7.02 10:08 수정 · 2020.07.02 14:2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6월26일 이사회를 열어 관리하는 임대산단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월 수출기업 3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3월30일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임대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건의에 적극 공감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산가정2 부전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 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규모는 5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 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있다. 유광일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등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추진부서〉 경기도 의왕시 교통행정과(031-345-3313)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의왕시-LH협업,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한 해결〉

• 개선배경

- 의왕포일인텔리전트 입주기업들의 주차공간 절대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 발생과 주차난으로 IT개발 인력 등 기업의 고급인력 수급이 어려워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2012년 택지개발 준공 이후 학교용지가 미매각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토지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

▶ 오랫동안 방치된 학교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건의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목적(학교용지) 외 사용 불가 -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용도 변경 불가	- 유연한 법 적용(공익을 위한 목적사용)으로 용도 변경 없이 임시주차장 조성 및 기업 주차난 해소

• 추진과정

- LH공사(학교용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협의: 2019. 5~7월
- 기업체의 주차장 이용 등 의견 수렴: 2019. 7. 11.~7. 22.
- LH공사(학교용지) 부지 무상사용 MOU 체결: 2019. 11. 6.
 - ※ 의왕시: 공용주차장 사용(6,500㎡) 등, LH공사: 재산세 감면 등
- 주차장 조성 반대 다수민원 접수(35건)로 주민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설명 설득: 2019. 11월
 - ※ 출입구 변경, 안전관리,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 주민편의시설 요구 등
- 주차장 조성 공사(5,500㎡, 136면): 2019. 11. 8.~2020. 1. 30.
- 주차장 운영 개시(136대): 2020. 3. 16.

• 개선 효과

-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일부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 장기 방치된 유휴지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지 주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조성
-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기업민원 조기 해소 및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 언론 보도

의왕시-LH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

포일2지구 주차난 해소 기대
부지면적 4,800㎡, 120면 규모

의왕시와 LH는 7일 양측 간 체결한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이...
이 협약 체결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4,800㎡(약 120면 규모)의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 체결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4,800㎡(약 120면 규모)의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한다.

경기신문

2019년 11월 07일 (목)
수도권 09면

김상돈 의왕시장이 포일2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일 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을 들여보내고 있다.

의왕 포일2지구 만성 주차난 다소 해소 기대

시-LH, 학교용지 주차장 활용
의왕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등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주차난을 겪어오고 있는 포일2지구 지역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의왕포일2지구 내 LH가 소유한 학교 용지를 무상 임대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5천 800㎡(1천200여평)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LH는 대상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동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이다.

• 관련 사진



<정비 이전>



<주차장 정비 후>

〈추진부서〉 경기도 광주시 기업지원과(031-760-4805)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 개선배경

- 광주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권역으로 중첩 규제되어 건물 증축 어려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부족한 공간 활용
- 조례 허용 가설건축물 재질 : 천막·유리·플라스틱(풍수해 및 화재에 취약)
- ▶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제한적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천막, 유리, 플라스틱)	- 강판재질의 창고를 확보함으로써 주요 자재 등을 별도의 증축 없이 화재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 추진과정

- 2016년 조례 개정 추진(2회) → 2017년 국토부 관원회신 결과 추진 불가
- 건축조례에 신규 조항 추가 추진 → 2020년 3월 건축 조례 개정 완료
 - 고문번호사 자문 의뢰, 국토부 관원 질의(2회), 건축과-기업지원과 부서간 실무협의



〈가설건축물(천막)〉



가설건축물(칼라강판)

• 개선효과

○ (경제) 불필요한 가설건축물 재설치 비용(6천여개 기업 2,970억원) 절감

기준(330㎡×10m)	금액(천원)	내구연한(년)	사용후처리	화재	태풍, 대설
천막	26,500	4	산업폐기물	취약	붕괴, 누수우려
칼라강판	30,000	12	고철	안전	천막보다 안전

〈가설건축물 재질 비교표〉

○ (환경) 가설건축물 교체 시 발생하는 폐 천막 등 산업폐기물 처리 최소화, 환경개선

• 개정조례 광주시 건축조례 제25조

제25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25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 -----</p> <p>2. 공장(제조업소 포함), 창고에 설치(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것 포함)하는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써 경량철골조(파이프조에 한정한다)로 지지하는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p> <p>3. 내지 6. - 생략 -</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가설건축물</th> <th>기타</th> </tr> <tr> <th>용도</th> <th>구조 및 재질</th> <th>규모</th> <th></th> </tr> </thead> <tbody> <tr> <td>창고용 건축물 (1)</td> <td>·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단열재가 없는 강판</td> <td>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하</td> <td>·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 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까지 건축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td> </tr> <tr> <td>창고용 건축물 (2)</td> <td>·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제한없음</td> <td>·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td> </tr> </tbody> </table>	가설건축물			기타	용도	구조 및 재질	규모		창고용 건축물 (1)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단열재가 없는 강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하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 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까지 건축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	창고용 건축물 (2)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제한없음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가설건축물			기타														
용도	구조 및 재질	규모															
창고용 건축물 (1)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단열재가 없는 강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하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 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까지 건축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														
창고용 건축물 (2)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제한없음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허용〉

· 개선배경

○ 코로나 등 의료폐기물 폭증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포화(처리능력 한계 봉착)

- 국내 소각시설 단 13개, 대부분이 노후시설이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서울, 전북, 강원, 제주 소각시설 없음)
- 소각시설 증설 및 확장은 nibi현상으로 지난
- 의료폐기물은 병원 내 멸균이 가장 안전, 그러나 대부분 수백킬로 이동하는 현실.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병원 내 장기방치, 불법폐기, 운송 중 보관불량·차량사고 등으로 2차 감염 위험 확산

※ 국내 멸균분쇄시설 : 분당 서울대병원에 1곳 유일 (규모 (W)20m×(D)6m×(H)5.5m,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 관련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임시허가 및 법령 개정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m 범위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 이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 엄격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9. 22. 시행 2020. 9. 25.>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 규제 개선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건의 개선완료

- '19.1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
- '20. 3. 행정안전부 건의
- '20. 5. 교육부 개정수용
- '20. 9.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신설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세부기준 완화 건의 : 병행 추진 중

[현행] 멸균 "방법" ⇒ [개선] 국제기준에 따른 멸균성취도 "결과"

⇒ 다양한 형태의 중소형 멸균분쇄시설 개발/판매 가능

- '20.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
- '20. 3. 행정안전부 건의
- '20. 5. 환경부 중장기 검토의견
- '20. 6. 시군순회간담회 통해 국무조정실 재건의
- '20. 7. 중소기업음부즈만 재건의
- '20. 10.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상정



'19. 12. 기업현장 방문
규제샌드박스 지원 및 과제 초안 작성(행안부 건의)



'20. 6. 시군순회간담회
과제 보완, 국조실·중기부 재건의

• 기대효과

-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포화에 대한 유일한 대안
- 병원 내 및 지역사회에 대한 2차 감염 예방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절감(톤당 백만원 이상)을 통한 의료 수가 합리화
- 다양한 멸균분쇄장비 개발(신산업)을 통한 거대 의료폐기물 처리시장 진입
 - 2018년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장 규모(2019년 11월 26일, GLOBE NEWSWIR)
세계시장 1,177억 달러(135조원) / 국내시장 2,000억원

• 언론보도

-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경기도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층해소
(2020. 9. 23. 중소기업뉴스, 한국경제, 아주경제, 경인방송 등)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허용, 탈카페인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신설은 안양시 추진하여 개선한 과제임.

- 병원계 골칫거리 '의료폐기물' 해소되나... 멸균분쇄기 허용
학교구역 근방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멸균분쇄시설 설치 재허용... 병·의원 의료폐기물 승통
(2020. 9. 25. 메디컬타임즈, 보건뉴스, 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 등 다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43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저탄소 캠핑장 조성	44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46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50
친환경 소재의 글램핑용 돔텐트에서 안락한 야영을 즐기다	52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입을 위한 101번의 프로포즈	54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경기도와 함께 규제의 문턱을 넘다	58
기사회생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60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64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3중세트

01

규제신속확인

기업이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하여 회신받는 제도

02

실증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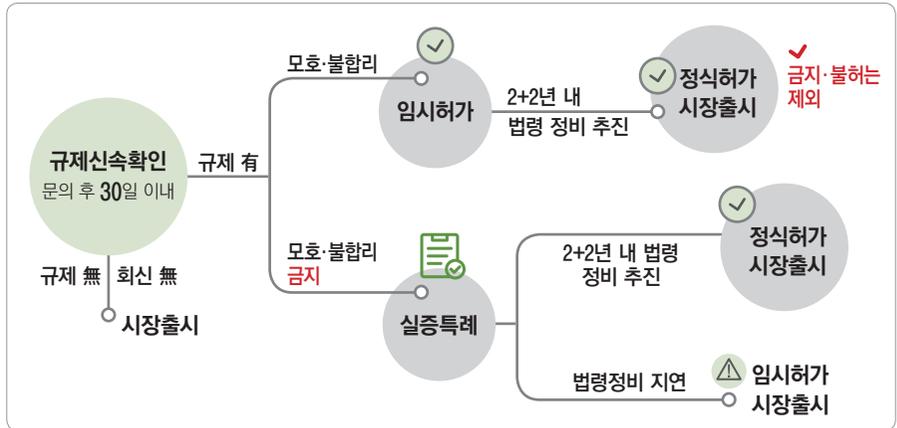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

03

임시허가

안정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先 출시허용, 後 정식허가' 제도

○ 규제샌드박스 절차



규제샌드박스 사례

- **신속확인** : 자율주행로봇을 이용한 배달서비스 시장출시가 가능할까요?
관련 규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
- **실증특례**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기존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차)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
 - 특례 : 실증특례를 통해 일정 조건하에서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해짐
안정성 검증을 통해 운행기준 수립 및 법령정비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287)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저탄소 캠핑장 조성
〈사용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을 재이용하여 파워뱅크 제작 규제특례 성과〉

• 개선배경

- 현재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약 200여개 보관중이며,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8만여 개가 배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치된 상태로 창고에 보관 중이었음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용량이 70% ~ 80% 가량 남아있어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이 가능함에도 각 지자체로 반납 후 보관만 하여 환경오염 및 보관 문제가 발생

〈피해사례〉 (주)굿바이카에서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하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배터리 재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매각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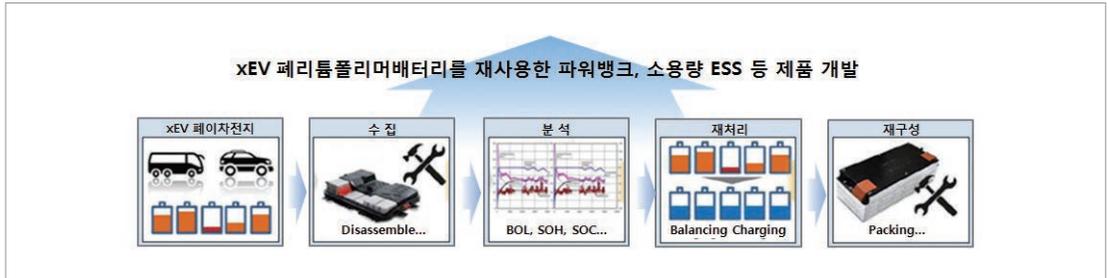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5조 1항(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안전인증의 신청 등)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폐배터리 재이용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캠핑용 파워뱅크로 제작·사용이 가능하도록 2년간 실증특례 승인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를 받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이용 캠핑장 파워뱅크 제작이 가능하게 됨.



• 추진과정

- ('20. 6.9.)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굿바이카 → 대한상공회의소 첫 접수)
- ('20. 7월 초) 산업부 답변 : 환경부·지자체의 배터리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 이행 요구
- ('20. 7.10.)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굿바이카 → 규제개혁담당관 문의)
- ('20. 7.15.) 굿바이카 현장방문 및 면담
- ('20. 7.1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회의(1차)
- ('20. 7.20.)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위한 관계 시군 모집요청
- ('20. 8.11.)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회의(2차)
- ('20. 10.19.)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 개선효과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 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9년에는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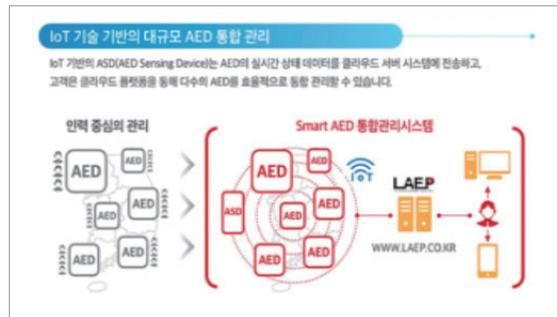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사례〉

· 개선배경

- 세계 1위 사망원인인 급성 심정지, 국내에도 연 3만건 이상이 발생하며 치사율은 92%, 하루에도 75명 정도가 급성심정지로 사망
- 유일한 생명줄은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최근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조사 결과 3대 중 1대가 미작동하는 등 매년 관리실태 문제가 심각함
- 안양시 루씨엠(주)가 IoT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유일 기술(일명 ‘Smart AED’)을 개발해 냈으나, 타사 의료기기 융합제품이어서 규제로 5년간 시장 진입 불가



Smart AED 제품 구성도
AED(타사제품) + 스마트 보관함(센서부착)
+ IoT 단말기 + 클라우드 기반 관리플랫폼(소프트웨어)



Smart AED 제품 원리도
(현재) 인력 중심의 월 1회 직접점검 (응급의료법)
→ (신기술) IoT기술 기반 대규모 AED 통합관리, 상시점검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장구역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 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공장구역 부대시설인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만 판매가능. 타사 제품인 의료기기(AED) 융합판매 불가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어렵게 시장 진입했으나 이번엔 조달 규제로 제품의 주 수요처인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 불가, 코로나 위기로 섰다운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 2인 이상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공급계약 불가로 조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근거 없음

▶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Smart AED’의 시장 진입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인 본사와 근린생활시설인 지점에서도 타사 융합제품 판매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인 본사에서 타사 융합제품 판매 가능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국내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공공기관에 조달 불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 가능 ※ 조달청 혁신물 등재 -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 수의계약 대상

-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지원 : 임시허가 국내 1호 성과로 시장진입
 - 기업이 큰 행정적 부담으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진입 좌절사례 많음
 - 시가 기업의 신청서 작성, 법 검토 및 대응논리 개발, 부처협의, 안전성숙 조력, 위원회 대응, 실증 지원 및 시장 진입까지 전 과정 원스톱 지원



'19. 1. 기업현장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



'19. 1.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조실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



'19.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전략회의



'19.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회 의약관리팀장 변론



'19.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회 동안보건과장 변론



'19. 4. 산업부 임시허가
샌드박스티م, 기업, 안양시

○ 조달규제 개선 언론 공론화



KTV 대한뉴스 '20. 2.
"개발하고도 판매 어려워" 각주구검 규제타파



산업방송 채널 '20. 2.
규제 개선이 길 열리고, 기활법은 성장 발판 마련

○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6개 과제, 13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 수의계약 대상 포함 건의
응급의료법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도 개선 등 6개 과제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음부즈만, 시장군수협의회 등 13회('18. 10. ~ '20. 10.)

○ 혁신조달 도전

- '20년 최초 시행 조달청 수요자제안형 도전적 과제 공모 선정('20. 4.)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플랫폼」
- '20년 제4차 혁신시제품 테스트 신청('20. 10.)
안양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 Smart AED 테스트 시범사업('21년 상반기 계획)

○ 전국 최초 건물 외부 공공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범 운영 준비 중

- 버스정류장, 공원, 체육시설, 도시재생 지역 등



• 개선효과

- Smart AED, 세계 유일 기술 18조 규모 의료사물인터넷 세계 시장 진입
 - 안양시 규제개선 성과 언론보도를 보고
 - 필리핀(동남아 세계 최고 성장률 시장)에서 거래 제안, 납품 완료



- Smart AED, 포스코 등 대기업,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납품
 - AED의 실시간 정상작동 확보를 통한 급성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내 생존율 제고
 - 생존율 최대 10배 이상 제고
 - 건물 외부 테스트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야간, 새벽 급성심정지환자의 생존율 제고
 - 세계 최초 AED 미작동의 다양한 에러사유 근거확보와 건물 외부 테스트를 통한 AED 관리의 세계적 표준안 제시 및 현행 응급의료법 상 AED 관리 제도개선의 근거 마련
 - 신산업 규제혁신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전파
 -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기업의 변호사처럼 전 과정 밀착 지원
 - 혁신조달의 선제적 활용으로 기업의 초기 공공판로 및 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지원
 - 전통적 규제개선 방법을 넘어선 선제적,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 도입, 집요한 노력
- ※ 정세균 국무총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 시 총리 칭찬사례



안양시장 최대호 전문가 기고
「규제 샌드박스의 전문성,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현장성 시너지를 위해」 국가산업융합센터 웹진 '19.6월호



시장 주재 규제현담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성과 공유('19. 9. 6.)

- ICT 융합 신기술에 대한 규제 모델을 제시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반 마련

〈추진부서〉 경기도 시흥시 첨단도시조성과(031-310-3741)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의 규제특례 성과

• 개선배경

○ 2019. 11. (주)만도 로봇플랫폼팀, 자율주행 순찰 로봇 개발 후 시흥시 실증특례 요청



〈첨단 기술의 실증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고민〉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호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행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에 애로	- 2022년 3월까지 규제 유예 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 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 통과('2020.5.13.)되어 생명공원 산책로에 자율 주행 순찰 로봇 투입이 가능하게 됨



〈규제개선 내용〉



〈규제개선에 따른 공공서비스 준비 사항〉

• 개선효과

- 공공장소의 CCTV 사각지대와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활동하고 순찰 공백을 보완하여 사전 범죄 차단 효과, 시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기반 마련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실증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계획〉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287)

친환경 소재의 글램핑용 돔텐트에서 안락한 야영을 즐긴다 〈도가 컨설팅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승인〉

• 개선배경

- 야영(캠핑) 활동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은 야영시설을 경직된 개념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었음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 합성수지(HDPE) 재질의 돔텐트는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 되어있음

〈피해사례〉 해당 제품은 기존 천막텐트 대비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여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합성수지 재질의 조립식 돔텐트 제작 가능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돔텐트는,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작이 불가능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조립식 돔텐트 제작 및 판매가 가능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를 받아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글램핑용 돔텐트 제작이 가능하게 됨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 추진과정

- ('19.12.6.)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19.12.9.)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 ('20.1.29) 산업융합 규제실증특례 신청
- ('20.4.27.) 제1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 ('20.6.23.)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실증비 등 지원)

• 개선효과

- 기존 천막 텐트 대비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눈·비·바람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야영시설 제작·판매가 가능해짐
- 돔텐트 시장 출시가 가능해 집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입을 위한 101번의 프로포즈
 〈2020년 제1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및 지자체 실증 밀착지원 사례〉

• 개선배경

- 안양시 관내 기업 ㈜부동산포스 신제품 큐브TV* 개발
 -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안쪽에 설치하여 중개업소의 보유 매물정보를 표시하고, 영업시간 종료 이후 QR코드를 통해 고객 요청을 접수하는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부동산 매물관리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큐브TV)〉

- 옥외광고물법 및 광역지자체 조례 상 규제로 시장진입·테스팅 좌절
- 높은 규제 샌드박스 진입 장벽 직면
 - 유사제품 개발업체(선방(주))의 선 진입과 실증지역인 광역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의 반대로 규제 샌드박스 진입장벽 직면 : 실증지역 변경·실증규모 축소 위기
 - 기업과 샌드박스팀 간 초기 오해로 소통 장애 발생
- 지자체 실증 진입 애로 발생
 - 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승인 받아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특례 확인서상 '지자체 신제품 설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진입 애로
 - 규제특례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리부서의 저항

※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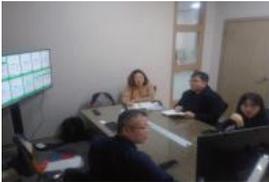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규제샌드박스 추진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한 시장 출시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신제품 실증 불가능	- 2020년 제1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0.4.) ※ 기초지자체 협의 조건부 실증 서울·경기400개소 설치 + 안양시·강동구 집중설치구역(100개소) ⇒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4조원 규모 국내시장 진입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전 과정 밀착지원*('19.12. ~ '20.4.): 215여 회
 - * 주요 지원사항 : 현장규제 확인, 샌드박스 진입을 위한 각종 대응논리 개발, 기업 대응방안 리딩, 위원회 핵심변론 지원, 원활한 실증을 위한 지자체 협의 조력
-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위한 「핵심 대응논리 개발」에 구심점 역할
 - 24회의 간담 실시(전문가, 기업, 안양시, 경제과학진흥원 협업 대응논리 개발)
 - 산업부·샌드박스팀과 기업 간 소통 조력, 절차의 원활한 진행 도움



'20.1.기업현장
경과원 박준식 연구원 협업
* 현장규제, 허위매물 이슈
* 선 실증 업체와 차별성



'20.1. 기업현장
고승진 변리사 협업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증빙관련 대응



'20.1. 기업현장
송도영 변호사 협업
* 지자체 반대 논리 법리적
대응 및 타협방안 논의



'20.2.기업현장
김진묵 교수 협업
* 신제품의 환경적 안정성
및 규제의 애매성

- 안양시,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전문성 있고 창의적인 변론 지원」
 - 설득력 있는 변론지원으로 실증특례 규모 확대 : 서울·경기 200개소 ⇒ 500개소

〈市 주요 변론내용〉

- * 기업의 독자적 ERP 프로그램, 부동산 허위매물 방지,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기능 강조 통한 제품의 혁신성(차별성) 강조
- * 허위매물 이슈 및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방향성 등 공익적 논리로 부동산 과열지구인 서울·경기 실증 필요성 및 실증규모 확대 호소
- * 제품 지자체 현장 설치에 대한 안양시 관련부서 직원의 견해(안전성, 환경 위해 無)
- * 선 실증업체와 건강한 경쟁을 통한 기술고도화 및 업계 정확의 가능성 등

- 어렵게 샌드박스를 통과하였으나... 기업이 지자체 협의 이행 불가
 - 안양시, 지자체 실증 협의 밀착 지원 (31회)
 - 안양시 전국 최초 실증특례 집중설치구역 추진* ('20.7.~)
 - * 전문가 자문, 부서 협의, 지원예산 수립, 유권해석 추진, 시민 홍보, 공무원 인센티브 등
 - 기업과 함께 타 지자체 방문 설득, 지속적 연락과 편지 등 소통 시도
 - * 강동구 7차례 지자체 협의, 3차례 광역지자체 협의, 3차례의 부처 유권해석을 통한 설득 성공
 - 설득을 위해 사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담당자를 설득하고, 실증 관련 중앙부처(산업부, 행안부, 국토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내 집중설치구역 실증 동의 성과



'20.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샌드박스팀, 행안부 협업
* 지자체 실증 관련 협의



'20.3.안양시 건축과
건축과, 만안동안전건축과 회의
* 집중설치구역 시행 협의



'20.6.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설득
* 집중설치구역 시행 협의



'20.6.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설득
* 집중설치구역 시행 협의

- 14개 기초지자체 대상 큐브TV 실증 협의('20.9. ~ '20.10.)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에 부여된 지자체 동의 조건 완화 추진('20.11.)
 - 산업부(1), 샌드박스 전문가(3), 기업(3), 안양시(2) 합동간담 공동 대응방안 모색
 - 다양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조건의 적법, 타당 여부 법률자문

• 개선효과

- 디지털사니지는 정체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 HW, SW, 콘텐츠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의 성장기여, 4조원 규모 국내 시장 진입

구분	세계(억\$)					국내(조원)				
	'14	'16	'18	'20	GAGR	'14	'16	'18	'20	GAGR
HW	80	97	116	142	10.1%	1.37	1.87	2.31	2.72	12.1%
-디스플레이	60	73	88	106	9.9%	1.25	1.70	2.09	2.44	11.9%
SW/서비스	20	25	31	40	12.6%	0.15	0.22	0.30	0.39	17.6%
광고 / 콘텐츠	52	71	99	132	16.7%	0.36	0.45	0.69	0.87	15.9%
합계	151	193	246	314	12.9%	1.87	2.55	3.31	3.97	13.4%

* 출처 : 과기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대책('15.12)

- 허위매물 방지를 통한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다양한 전문가 활용 및 기업 시장진입을 위한 지자체 협업의 수범사례
- 신기술 테스트를 통한 근거 확보로 디지털사니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내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유도를 통한 혁신성장 및 전국적 파급효 기대
- 비대면 디지털 경제/ ICT 기술 융복합 촉진으로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2020. 12. 대한민국 전자전 참가(KES)〉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

© 박성재 기자 | © 승인 2020/06/11 09:28 | © 9컷0

| 부동산포스 박성우 대표



〈2020. 6. 월간인물〉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287)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경기도와 함께 규제의 문턱을 넘다 〈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 개선배경

- 푸드트럭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기동성 및 다양한 상권 확대가 가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료 보관, 식품조리, 세척 공간에 제약이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 푸드트럭의 영업 환경상 식품 전처리 및 1차 조리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푸드트럭 영업신고 체계 하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등록이 불가능

〈피해사례〉 푸드트럭 공유주방은 주방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푸드트럭 사업자의 위생적인 식품가공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관련법에 따른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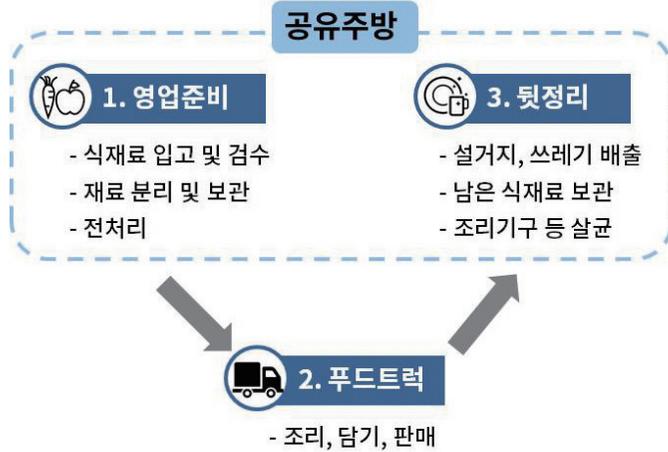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제공 가능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① 푸드트럭이 아닌 곳에서 조리 금지 ② 한 개 주방 다수 영업자 공유 불가	① 푸드트럭이 아닌 공유주방에서 조리 가능 ② 한 개 주방 다수 영업자 공유 가능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특례를 받아 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가 가능해짐

공유주방 업무 프로세스



• 추진과정

- ('20.2.2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20.3.27.)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신청 (규제있음 회신)
- ('20.4.29)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회의
- ('20.5.8.)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
- ('20.6.30.)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 ('20.8.2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실증비 등 지원)

• 개선효과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품질 높은 식품을 소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기사회생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신기술 신호등 램프 성능평가 규격 신설을 통한 시장 진입〉

· 개선배경

○ ㈜필오나,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개발 및 특허 등록

* 조도감응방식 LED신호등 : 신호등 램프별로 부착된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조도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신호등의 광도를 조절 (전력량 절약(50%) 및 최적의 시인성 확보)



〈광도 센싱 디밍〉



〈감지 센서의 위치〉



〈주간 운용 (100% 광도)〉



〈감야간 운용시 (50 % 광도 디밍)〉

○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7년 동안 시장 진입을 못했고 사장 위기에 처함

※ 관련규정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2011.11.11.)」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를 통한 시장 진입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5.6 야간 조광제어 (권장사항) - (2) 이때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조광제어 상태로 설정되면 신호등의 밝기는 지정된 범위로 감소되어야 하며, 조광제어 해제 시 신호등의 밝기는 조광제어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5.6 야간 조광제어 (권장사항) - (2) 조광제어 방식 - ① 제어기 방식: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조광 제어상태로 설정되면 신호등의 밝기는 지정된 범위로 감소되어야 하며, 조광제어 해제시 신호등의 밝기는 조광제어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② 조도감응방식 : 신호등 외부에 설치된 조도 센서가 야간환경을 인식하면 신호등의 밝기는 지정된 범위로 감소되어야 하며 주간환경으로 인식될 시 신호등의 밝기는 조광제어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기준조도 및 허용범위 1,000LX±10%)



〈'19. 3. 규제샌드박스 기업 간담(전문가)〉



〈'19. 3.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작성 지원〉



〈'19. 12.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지원〉



〈'19. 12. 규제샌드박스 대응방안 논의(전문가)〉

- ('19. 2.) 현장 규제 발굴 및 규제샌드박스 안내
- ('19. 2.) 산업융합 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 신청 및 철회* * 근거자료 미비
- ('19. 3.) 행정안전부 네거티브 규제혁신 과제 건의
 -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규격 신설 건의
- ('19. 4.)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재건의, 경찰청 직접 협의 병행
- ('19. 5.) 기업 신제품 테스트 자료 등 정량적 객관적 평가자료 마련 조력
- ('19. 7.) 경찰청 규제개선 불수용
- ('19. 10.) 경찰청 신제품 시장진입 불가 회신
- ('19. 12.) 산업융합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도로교통공단 추가 테스트 추진
- ('20. 3.) 행정안전부 재건의
- ('20. 4.) 중소기업음부즈만·국무조정실 재건의 ⇒ 경찰청 개정 수용
 - ※ 신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 완화 병행 추진 중이며
 - '20. 12. 경찰청 김다희 경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수용함('21.초 개정 전망)
- ('20. 5.)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완료, 공시 : 규제개선

- 〈규제개선 노력〉 -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임시허가) 신청 추진 : 2회
 -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 73회(신청서 작성·보완, 샌드박스 대응논리 등)
 -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 5회(행안부, 국조실, 중소기업융합부즈만)
 - 기업·개발진·전문가 간담 및 소통 : 212회
 - 경찰청 담당자·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 규제소관 담당자 업무협약 : 12회

• 개선효과

-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2,000억 규모 국내 시장 진입
- 친환경·전력 최대 50% 절감, 유지보수 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그린뉴딜 선도
 눈부심 방지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최적의 시인성 제공, 도로교통 안전 확보

규제개혁을 선택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031-8045-2211)

작년에 이어 안양시의 규제혁신 테마는 또! 생명입니다....

전국 최초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 등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대면 신기술의 규제를 해결하고 세계 유일 기술을 18조원 규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로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경진대회 전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 규제개혁에 늘 전폭적이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경기도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한 지 어느덧 만 3년이 넘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어렵고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바로 이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고, 과감하면서도 집요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장 속에 다양한 스승을 만나야 하는 규제개혁은 참 매력적인 분야기도 합니다.

강요된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위해 더욱 집중하고 깊이 공감해야 하며 복잡한 의사소통 능력과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회복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휴먼스킬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진정 시민을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안양시의 지난 3년은 선택과 집중의 해였습니다. ‘사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선택했습니다. 치명적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원천기술 의료기기를 13조 시장에 진입시키기도 했고, 테스트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의 기준을 완화해 산업군을 10배 이상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실증 지원으로 모바일에 이은 제4스크린이라 불리는 디지털사이니지의 시장 진입을 도왔고,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센서형 조도감응방식의 LED 신호등 램프의 규격을 신설해 시장에 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63개 신호기 기업의 막힌 판로를 뚫어내기도 했고 코로나 19로 처리능력 포화 상태에 이른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다양하고 도전적인 길 속에 나의 방식이 아닌 시민 맞춤형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재인증으로 지자체 규제혁신의 기반과 프로세스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인증과 더불어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적극행정 선도지자체까지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 저력은 무엇보다 시민을 향한 무모한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는 최태호 안양시장님의 강력한 관심과 비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지혜를 준 많은 스승들...그리고 보석같이 빛나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신 나의 어벤져스, 안양시 규제개혁팀에게 깊은 감사의 맘을 드리며 오늘도 시민과 기업을 깊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화성시 기후환경과(031-5189-6712)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 개선배경

정부 발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1. 17.)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 연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화성시는 수소차 보급에 앞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민간의 수소충전소 사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여러 이유 등으로 민간의 사업참여가 전무한 실정임
 〈수소충전소 구축상 한계점〉
 - 각종 법령상 규제로 인한 입지상 제한
 - 수소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업 경쟁력이 있는 도심 지역 설치의 어려움
 -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망 부족
- 이에 화성시는 선도적으로 현대 하이넷과 협약을 통하여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법상 공공청사 내에 설치가 불가능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화성시청)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건의

※ 관련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공공청사에는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	- 공공청사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수소연료공급 시설 포함

• 추진과정

- 2019.03.14. : 네거티브 전환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 2019.04.26.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건의
- 2019.04.~05.: 관련부서 협의 및 규제개혁안 보고
- 2019.05.21. : 규제개혁신문고 중장기 검토 답변
- 2019.06.~07.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과 1차, 2차면담(국토부 협의·조정)
- 2019.07.31. : 네거티브 건의과제 결과 회신(국토부 중장기 검토 의견, 소극적)

- 2019.09.~10.: 중앙부처(국토부) 법개정 필요성 지속 건의
- 2019.10.18.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화성시 → 경기도)
(질의내용) 규칙 개정 이전에 공공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착수가 가능한지
- 2019.10.2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한 : ~12.02.까지, ※ 법제처 개정 3~6개월 소요)
- 2019.11.07.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통보(경기도→화성시)
(회신내용) 규제의 면제 불가능,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시설 규칙」일부 개정령안이 확정·시행되어 효력이 발행한 이후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 2019.11.25. : 중앙부처(산업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산업부 화성시 방문)
- 2019.12.06.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법개정 지원 협조 요청
- 2019.12.19. : 중앙부처(환경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
- 2020.01.0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선효과

- 수소충전시설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시설은 안전하다는 인식 제고
- 전국 공공청사 약 4,500개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그린뉴딜정책에 최적화 된 사례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가솔린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질소산화물 감축효과 발생

• 관련사건

화성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

ⓒ 송은경 기자 | © 승인 2020.10.09 10:36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수질혁신센터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차여 사업으로는 최초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8일 화성시 방교동 795동월 수질혁신센터에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시설물 화성시장과 장영학 수도관리과장, 유종수 하이넷(주) 대표이사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해 태이프 컷팅식과 사업 경과보고,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동탄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보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국비 15억 원,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수소관련 기업이 참여할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의 15억 원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용량은 25kg/회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최소 50~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는 자체 테스트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일반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 테스트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질혁신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촌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총 3개의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물 화성시장은 "수소충전소의 친환경 수소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경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



잡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69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73
관광안내 '챗봇'이 도와드려요	76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	78

〈추진부서〉 경기도 성남시 물순환과(031-729-4182)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전국최초 비행안전 1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행위제한 완화〉

• 개선배경

〈현황〉 성남 하수처리장은 성남시 전역(판교제외)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29년간 운영함에 따라 시설 노후로 인해 과도한 수선유지비 및 시설개선비 등 막대한 예산 소요 또한, 하수처리장이 설치(1992년)되었을 때의 주변환경(논, 밭 등)과 달리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심지로 변모되어 인근주민 및 주요간선도로 이용자의 악취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

- 성남시는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하는 '성남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는 공공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재개발 순환주택,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그러나, 통합현대화사업 부지는 군사기지법 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 속하여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으로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임
-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특성상 배수구역 하류에 입지하여야 하나, 비행안전 1구역과 중첩되어 군사기지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

▶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건의

• 개선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개 선 전	개 선 후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금지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가능

- 군사기지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군부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한 결과, 지난 3월 군사기지법 개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추진과정

- 군부대 협의
 - 2018. 10. :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보고(T/F팀 구성 및 운영)
 - 2018. 10. : 비행안전1구역 저축에 따른 군부대(15비)협의
 - 비행안전1구역 내 지하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심의절차 이행 협의
 - 심의내용 : 작전성 검토 및 비행안전1구역 심의(15비 및 공군본부)
 - 2018. 11. : 비행안전구역내 행위협의 [성남시 → 15비]
 - 2019. 1. : 1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건의서 제출 [성남시 → 15비]
 - 2019. 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저축, 입지불가 통보 [15비 → 성남시]
 - 2019. 3. : 관련사항 재협의(법률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시 → 15비]
 - 그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고 기존시설을 포함한 완전지하화계획에 긍정적 검토의견, 군 심의절차 이행과정에서 법률개정 필요 사항 결정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 상정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계획 알림[경기도 → 성남시]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제출[성남시 → 경기도]
 - 2019. 5.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설명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요청[경기도 → 성남시]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제출[성남시 → 경기도]
- 중앙부처 협의
 - 2019. 3. ~ 2020.2. : 사업추진 및 법률개정 관련 간담회 다수 시행(국회의원, 성남시, LH공사)
 - 2019. 7. : 군사기지법 개정안 국회 상정
 - 개정안 국회 상정 후에도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개정 필요성 지속적 설명
 - 2020. 3. :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개선효과

- 전국 최초 비행안전 1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능(제도적 기반 마련)
- 행복주택, 재개발순환주택 및 창업지원 시설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성남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이나, 환경기초시설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부지를 이용한 공공개발 등 토지 이용효율 향상
- 기존부지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2,500명) 및 주거공급(3,000세대)
- 전국 11개 군사비행장과 군 접경지역의 군사시설에 관한 규제개혁 계기 마련

자료

중부일보

HOME 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권대성 | 승인 2020.03.08 17:31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재안서 접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업완료로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체계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업이다.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돼 29년째 운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sd1919@joongboo.com



23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오른쪽)이 협약서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LH)

[이슈아래에 이론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

LH는 23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수정구 북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는 1992년 준공된 후 하루 40만 규모의 하수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관원비율 증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겪어온 시설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과 관련 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남시는 센터를 수정구 태평동 민간인 영근의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옮겨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기로 삼고 합의했다.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위례신도시와 북정지구를 잇는 '영남일자리 창출 벨트'로 만든다 계획이다. LH는 3000가구 규모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LH는 '영남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 생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시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순환을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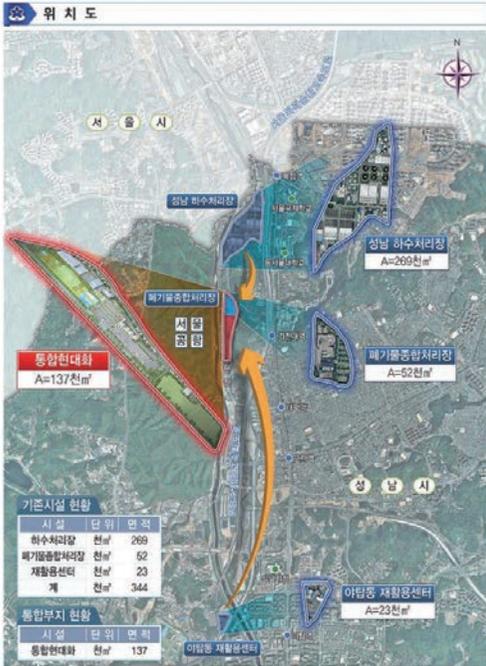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2025년 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민원 부담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군사시설과 도포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기초시설 등 비활용 지장이 없는 공공시설은 설치가 가능토록 군사기지법 개정을 지원하면서 이번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LH측 설명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익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성남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현대화 사업



조감도 및 개발구상(안)



〈추진부서〉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7)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소극적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으로 전국 최초 공유수면에 점사용료 징수!〉

• 개선배경

- 한국전력공사, 「354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당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의제협외)’ →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 취득
과거 관행에 편승하여 반대급부적 성격인 송전선로 점용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5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표4]〈도면#33〉

▶ 점용료 징수를 위한 법령 근거 마련 및 행정소송 수행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상부공간 법령 및 개념 미흡으로 송전선로 허가시 부터 최근까지 길이(선,km)로 점용사용 징수됨. (점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20년 이상 관행 개선 필요) - 허가당시 부과하지 못한 점용료를 법령에 근거한 소급징수 여부(신뢰보호원칙 검토) - 송전선로 면적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선로 점용료 대상 중앙부처 법령 질의 및 점용료 산정에 대한 훈령 개정 - 공유수면법의 명확한 해석 및 적극적 법률 검토 (관행타파), 즉시 행정처분 - 3년간 적극적 소송대응(신뢰보호 위반여부) -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징수는 정당한 행정처분 판결(2019.10.8.) - 판결에 따른 한전과 현장 합동점검 및 측량

- 과거 소극적 행태를 탈피하여 불확실한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적극적 행정 행위를 통한 공유재(공유수면)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한 전국 최초의 사례 발굴

• 개선내용

- (국토관리적 측면) 공유수면법에 규정한 정당한 행정행위 전국 최초 실현
 - 공공재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갈되기 전 관리 실현
- (경제적 측면)
 - 2013년~2019년 공유수면 소급징수 점용료 250억원(향후 매년 약 40억원 부과 징수)
 - 21개 시군 적용가능 :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간 갈등 비용, 소송 비용 절감

• 보도자료

‘신뢰 보호의 원칙’의 희생양 市, 한전에 215억 소송 1심 ‘패소’

市, 2017년 개정 시행령 따라 월말 선하지 215억 점용료 징수 한전, “월말 이의 공유수면 점용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며 소송 제기 담당자 행정처리에는 문제 없어… 市, “항소 할 것” 2심 결과 주목

안산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제기한 대부도 공유수면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시는 지난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점용료 215억5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내야 할 상황이라서 앞으로 시의 대치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정부(재판장 권덕찬)는 지난 1월 10일 1심 선고에서 안산시가 지난해 3월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사용료 215억 5천522만8천7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은 관습을 내세웠다.

해당 소송은 시가 그간 한전이 대부도 공유수면에 설치, 사용해 온 송전철탑 41기의 월말 부지에 대해 부과해 온 점용·사용료 이외에 지난해 3월 한전 측이 제출한 도면에 의거해 총 47기의 철탑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공간(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해 남부 받은 비용을 한전 측에서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전은 월말 선하지의 점용료 부과에 대도시의 부과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뤄졌으며, 송전철탑의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잘못 선정되었고, 공유수면 점용료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가 부과한 법률상 근거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업무 규정은 해당 수산부고시로 시행된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재량준칙에 불과하기에 토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용료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한전의 주장은 한전 측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해 안산시가 한전에 지켜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한 점용료 부과보다 우선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까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과연 한전이 연산시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위한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시정조성위원회 열여섯 위 사건을 주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직자의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적법한 부과였기에 이는 끝까지 법적 다짐을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건시 >> 4면
이호영 기자 kaz@sanarimes.co.kr

수요 넘어선 중심상업지구 관내 학교 주차장 개방

주차 문제, 주차장은 단위에 맡긴 ‘유세’라는 수식어는 한때 도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왔다.

또한 주차 문제는 전형적인 도하나로 대한민국의 인구밀도가 3미터에 하나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앞에도 언급했듯이 안산은 지난 안업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왔다.

방사선은 뻗은 넓직한 중앙상업지구 중심으로 상하수 광장, 고잔신도시, 한 대안까지 서울의 도심과 부도상업지역의 배치, 그리고 상하수역으로 자리 잡은 아라치말을 보인다.

하지만 안산의 본 줄 주저지려, 소위 다채로 조금 다르다. 특히 도미치 생각하지 못했다

<보도일자:2019.6.18.>

안산시, 공유수면내 송전선로 점용료 받는다

<전국 최초>

<시화호·대부도 일대>

한전, 市 상대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부과 적법’ 판결

매년 40억여원 세외수입 ‘추가 확보’ 시민위한 사업 투입 예정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게 됐다. 시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외수입 매년 40억여원 내역을 받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최근 받았다.

부과 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지난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송전선로는 ‘345kV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16km 길이에 걸쳐 설치돼 영흥도와 대부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영기 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매년 주변 공

사지기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여원에 추경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 219억여원(2013년 3월~2018년 5월)을



안산시 관할 시화호 일대 공유수면 내 설치된 송전탑 및 송전선로. /안산시 제공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받았으나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민들

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의 적극 행정으로 송전철탑제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산/강태희 기자 kimdh@kyeongin.com

<보도일자: 2020.2.18.>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확보



안산시 해양수산과
이 지 선
(031-481-2337)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복지부동, 탁상행정, 내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 등 이전 이런 비판적인 말은 옛말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규제는 안전·환경·미래자원 보존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혹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칙을 개선해야 할 때가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전기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의 불가피한 시설물이지만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과거 법령 미흡으로 공공재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 요청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전선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과거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는 전국에서 첫 사례로, 대형로펌을 상대하여 3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처분 전 법률자문이 부정적 임에도 소신 것 행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완전 패소하여 내외부의 질타에도 꺾끗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최종 점용료 징수권을 확보했다.

새로운 세원을 연간 40억 원씩 징수하게 되어 시 재정에 반영하여 우리시민을 위해 사용하므로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실패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기 때문이지만,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다.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문화관광과(031-940-4362)

관광안내 ‘챗봇’이 도와드려요
 〈기초지자체 최초 인공지능 여행안내 서비스 실시〉

• 개선배경

-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며, 2019년 전국 지자체 관광 경쟁력 평가 시, 경기도 내 최우수 지자체로 관광안내 수요가 많음
- 평일 근무시간에만 관광안내가 가능하고, 관광안내 전문인력이 없어 정확한 안내서비스 제공에 한계, 관광안내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

▶ 상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평일 근무시간에만 관광안내 가능 - 관광데이터 수집 어려움	- 365일/24시간 상시 관광안내 가능 - 관광객 질문 데이터 활용 관광정책 수립

○ 파주시 관광과, 업무관련 ‘혁신동아리’ 구성 : 2020. 1. 6.

- 동아리명 : ‘자유로운 여행 파주’
- 주 제 : 관광활성화 및 연계 콘텐츠 개선방안 연구
- 구성/활동 : 관광과 직원 6명 / ‘20년 상반기 7회 모임, 약 24개 관광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 시간·장소 상관없이 관광안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관광안내 시스템 개발, 관광정보 접근성·편의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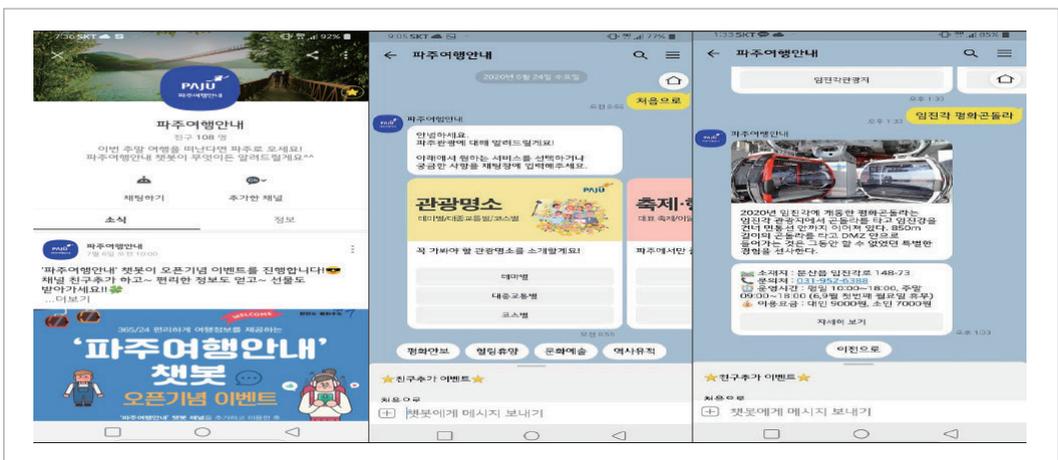
○ 추진일정

- 2020. 2.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20. 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완료(경기도)
- 2020. 4. 챗봇 개발 용역 계약
- 2020. 6. 챗봇 개발 완료
- 2020. 7. 챗봇 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 24시간 365일 가능한 상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 ① 선택형 관광 안내 : 주제별(관광/축제/음식 등) 105개 시나리오 구성
 - * 관광명소(테마별, 대중교통별, 코스별), 축제행사(대표축제, 공연전시, 이달의 행사), 음식·숙박·쇼핑, 관광관련 신청·예약·문의 등 선택형 버튼
 -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관광·문화 관련 부서와 협업
 - ② 자연어 상담 : 관광지 고유명사 등 기본질문 120개, 관련질문 약 600개 답변 구성
 -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AI 모니터링을 통한 업데이트

• 개선효과

- 서비스 개시이후 약 4개월(7.1.~11.11.) 동안 사용자수 1,128명(카카오채널 712, 홈페이지 416)
 - 자연어 질문 1,010건, 조회 1,675건 등
- 365일/24시간 상시 관광안내를 통한 관광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관광 정보 검색 데이터 수집을 통해 관광정책 수립에 적용
 - 방문자 분석, 자주하는 질문, 시간대별 방문자 수, 매체별 방문자, 이용시간 등 분석을 통한 시기적절한 관광정보 제공
- 단순·반복적인 관광정보 문의에 대한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언택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도시개발과(031-940-4711)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 개선배경

- 통일동산은 1990년대 국내 최대 안보관광지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택지지구의 급속한 개발과 정책 변화로 다수의 미개발지 발생
- 개발수요 부족 및 신규 콘텐츠 부재로 매년 이용객 감소
- ▶ ‘파주 통일동산’ 활성화를 위한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도입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1990년대 이후 장기 미개발지	- 아시아 최대 규모 CJ ENM 콘텐츠월드 유치

□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 통일동산 내
- 면 적 : 21만7천㎡
- 사업기간 : 2019 ~ 2021
- 투자규모 : 3,200억원
- 사업규모 : 축구장 32개규모
 - 14개 대단위 스튜디오
 - AR/VR 관광체험시설 등



- 적극적인 규제완화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국내최대 미디어기업 CJ ENM의 민간 투자사업 유치
- LH 토지매각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해결
 - LH와 시행자간 갈등을 행정력 기반의 중재안을 제시·협약하여 사업실현
- 단순 방송스튜디오에서 콘텐츠월드로 개발계획 구상·수립
 - 지자체-사업시행자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최초 콘텐츠 기반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도입
- 신속·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단기간 내 26일 심의까지 통과
 - 사전과업 일괄착수 및 역공정계획 수립으로 부실우려 해소

- 법률자문 등 발빠른 대처로 사업 안착
 - 토지매각에 대한 특혜시비에 대하여 법적 검토의견(자문) 제시(LH 이해설득)

• 개선효과

-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파주 통일동산' 활성화

→ 연간 120만명의 관광수요 창출. 향후 헤이리문화지구, 경기도 체인지업캠퍼스, 국가시설과 연계한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 콘텐츠월드 조성·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콘텐츠관련 4차산업 청년일자리 21,700개 창출

CJ ENM 파주 콘텐츠월드 사업 본격화...내달 진입로 공사

뉴스리전 | 2019-08-19 06:16



노승혁 기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다음 달 CJ ENM이 신청한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 오후 CJ ENM 콘텐츠 월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에 아사라 파주 광호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 협약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CJ ENM 콘텐츠 월드 사업이 본격적인 CJ ENM은 최근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된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

파주 CJ ENM 콘텐츠월드, 2년 앞당겨 내년 1단계 완공

뉴스리전 | 2019-12-16 11:37



노승혁 기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에 조성되는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내년 말 완공될 전망이다.



파주 CJ ENM 콘텐츠월드 현장 방문 중인 파주시청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종본 시장은 16일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공사 관

계지도를 만나 재래하여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6월 CJ ENM과 상생협력 체결 후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한창이다.

파주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 상생협약

파주시와 주식회사 씨제이엔엠(이하 CJ ENM)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파주시와 CJ ENM은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인프라를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력내용) 파주시와 CJ ENM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 및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상생 협력한다.

제3조(역할분담) 파주시와 CJ ENM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파주시는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본 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무와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2. CJ ENM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인근 문화지구와의 문화협력, 지역 콘텐츠 업체와의 상생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파주시와 CJ ENM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기로 한다.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019년 6월 12일


파주시장
최종환


CJ ENM 대표
허민희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지 경기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규제개혁담당관

편집제작 규제개혁담당관

디자인·인쇄 경인인쇄사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Tel. 031-8008-4129 Fax. 031-8008-6719
www.gg.go.kr

발간사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0년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경기도에서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합리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은 민생불편 해소, 기업애로 해소, 규제샌드박스, 지역발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과제별 규제개선 배경과 개선내용, 효과를 알기 쉽게 풀어내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순회 간담회와 민생규제 도민공모전을 통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눈에 띄게 감축하였고, 비행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등은 규제로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투자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성장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신산업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규제샌드박스’를 밀착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중앙-도-시군의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민께서 규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을 통하여 규제합리화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경기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월

경기도지사 이기명

목차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PART 1

민생불편 해소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9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11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13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15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19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21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23



PART 2

기업애로 해소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2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31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34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36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38



PART 3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43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저탄소 캠핑장 조성	44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46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50
친환경 소재의 글램핑용 돔텐트에서 안락한 야영을 즐기다	52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입을 위한 101번의 프로포즈	54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경기도와 함께 규제의 문턱을 넘다	58
기사회생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60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64



PART 4

지역발전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69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73
관광안내 '챗봇'이 도와드려요	76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	78

민생불편 해소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9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11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13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15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19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21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23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개선배경

〈수원 권선지구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개교: '23.3월)〉

- 사업규모 : 곡반3초·중학교, 학교복합화(체육관, 대강당, 수영장 등 포함) 시설
- 사업비 : 721억원(국비 40, 시비 235, 기타 446 / 복합화 275, 학교 216, 부지 230)
- ※ 학교복합시설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학교시설
-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
 - 중복투자심사 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향상 부진, 집단민원 지속 발생, 관계기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투자심사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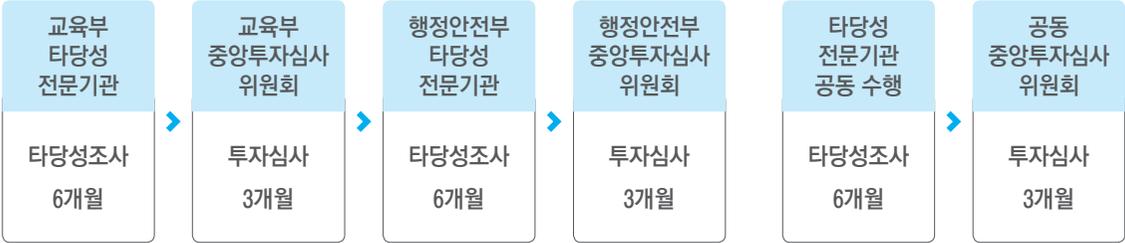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지방재정 투입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투자심사 일원화(지자체→행정안전부, 교육청→교육부)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 예상	- 행정안전부 &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 ⇒ 최대 9개월 기간 단축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입 학교시설 건립 관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 일부 수용으로 화신
 - 법령 또는 지침(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및 시행(9월)
- 경기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조기 개정 건의 → 조기개정 공식화(6월)

(현행)

(개선)



• 개선효과

○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심사기간 최대 9개월 단축
 “경기도 조기 개징 건의로 예산절감 효과·주민편의성 UP”

현행 (총 15개월)	개선 (총 9개월)
교육부 지방교육청 9개월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청 9개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3개월	지방교육청 투자심사 3개월
총 15개월	총 9개월

* 학교복합시설: 학교부지 내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 형태로 학생 및 인근 주민편의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보도자료

시사-백화 **보도자료** 작성과 제정경과

담당자: 최 영 000 / 사무관: 000
 연락처: 064-205-3702 / 064-205-37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책 개선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경기지사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

- 행정안전부(윤관 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편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교부지 내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지원하고, 인근 주민편의를 얻을 수 있는 시설
- 자치단체의 원안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을 완화(0%→4%, 정지심사 확(80%→4회))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 이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의 협력을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2020.6.18부터 시행)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의 교육부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 총 42건: 기존 지자체 22건의 이상, 광역 지자체 30건의 이상 심사 필요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교육부 **보도자료** **시사-백화** **시사-백화**

2020. 5. 27(수) 배포

담당자: 지방교육정책과 / 담당자: 김 철 000 / 사무관: 000 (02-944-203-4199) / 02-944-203-4520

수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윤관 진)는 시도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제정된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마련한 경우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공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새로운 경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 6. 2(화) 배포

담당자: 2 / 연락처: 000 (031-8008-4101) / 000 (031-8008-4140) / 000 (031-8008-4128)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
 - 도의 규제합리화 조기 개징 건의로 정부 50%

-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 전망이다.
-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정평가연구원(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대학교(교육부)) 중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부담되는 학교복합시설 건설 건립의 관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6개월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105)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억울한 소매인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선배경

- 현행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으로 개선이 필요함

〈피해사례〉 편의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으나, 경찰조사 시 위조한 신분증으로 밝혀져 소매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음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건의

※ 관련규정 :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2개월간, 2차 3개월간 영업정지	-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 추진과정

- 청소년 담배 판매(신분증 위조 등) 과도한 행정처분 규제 인지·검토 : '19. 4월 ~ 9월
-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담배사업법 개정 건의 : '19. 9. 10.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중장기 검토' 의견 회신 : '19. 10. 2.
- 수퍼마켓 소상공인 청소년 담배 판매 규제애로 현장 조사 : '19. 10. 16.
- 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 '19. 10. 30.
 - 피해마트 방문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 「민관합동 민생규제협의체」 개최하여 청소년 담배구입 방지 위한 법률 개정 요청 (국무조정실 등 참석) : '19. 11. 26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수용' 의견 회신 : '20. 3. 24.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개정 : '20. 3. 31 / '20. 6. 24

• 개선효과

- 편의점 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및 불필요한 행정소송·심판 소요비용 절감
-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자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져 청소년 탈선 방지 효과



• 개정법령(담배사업법 제17조)

개 선 전	개 선 후
<p>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p>	<p>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7.1]</p>

〈추진부서〉 경기도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894)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공장유도화지역내 골재공장 불승인〉

• 추진배경

- 공장유도화지역에 골재공장 승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과 생명 안전에 위협을 받는 주민 보호 필요
 - 공장유도화지역* 내 부지면적 13,170㎡, 파쇄·분쇄기 400마력 5대, 덩크25톤 600회 운행분량의 골재 분쇄·파쇄공장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작물 오염, 마을길 포화, 농업(생업), 어린이집 및 사찰 등 생존권 위협한다며 주민 465명 집단 민원 제기
 - * 공장유도화지역이란?
 - 공장 등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 목적으로 조례(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유도지역임
 - 해당기준(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및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유도화 지역 허용 -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피해 유발업종(골재공장)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유도화 지역 폐지 - 계획관리지역내 환경피해 유발업종에 골재공장을 제한업종으로 추가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항소로 3년에 걸친 행정소송 최종 승소('20.3)
- 김포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제외조항(습식은 제외한다) 삭제 개정 건의('20.1)

• 개선효과

- 정온시설(종교시설, 어린이집, 농가주택 등)의 생명·안전 보호와 관련법 및 제도 개선으로 시민 환경피해 근원적 차단 기반 마련



규제 완화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자



김포시 기업지원과
정진호
(031-980-2894)

이번 규제합리화경진대회는 기존의 규제완화, 규제개혁과 다른 점이 있다. 기존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대회였다면, 올해는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규제합리화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의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무분별한 공장의 난립으로 난개발지수 1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난개발이 심한 일부 지역주민의 질병발생률이 높게 조사되기도 하였다.

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사람을 위해 필요한 법이 오히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자이다. 법령을 집행할 때 기계적인 적용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규제완화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묵묵히 꼭 필요한 규제를 강화해왔던 업무가 발탁된 사례이다. 이번 사례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공직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추진부서〉 경기도 부천시 재개발과(032-625-3770)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민·관 협력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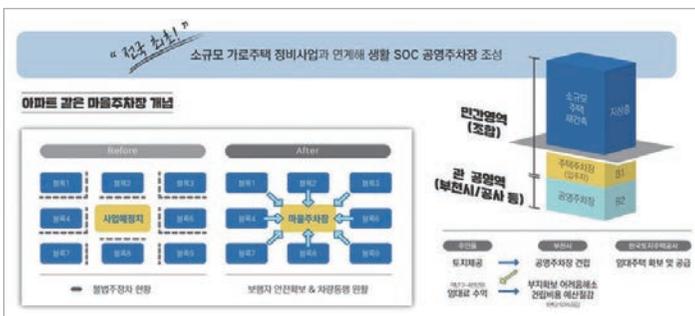
- 부천시의 원도심은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후 조성된 저층의 노후 주거지로 주거밀도가 높고 공원, 주차장 등 기초인프라가 부족하여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시급함
- 특히 원도심의 불법 주차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공간 부족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도심의 전통시장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복합 쇼핑몰과의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

▶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 불편해소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주택정비사업추진 ⇒ 구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 주택정비사업+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물로 건립 ⇒ 구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 인근 지역 주차난 해결 ⇒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0.24.)
 -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도입」으로 민간소유건물에 공영주차장 건립 시 국도비 지원 가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9.11.28.)
 - ▶ 정비기반시설(주차장) 확대를 위한 가로구역면적 확대 (구역면적확대 1만㎡→1.3만㎡(조례위임), 2만㎡(심의)허용)



• 추진과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 3('19.2.12./'19.4.9./'19.9.25.), 국회 토론회 개최('19.3.12.), 전문가와 법령 개정 회의('19.2.26.) 등 실시
- 전국 최초 민·관 공동사업 추진으로 변호사 자문 4회,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2회를 실시하여 소유권 및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
- 사업지 발굴을 위해 조합원, 임원 및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지 선정
- 부천시-부천여월LH조합-LH와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19.4.9.) 및 세부협약('20.8.21.)을 통해 공영주차장 85면 설치 및 임대주택 29호 건립 추진
- 부천시-삼협연립3차 조합과 제2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협약('19.8.5.) 및 세부협약('20.7.28.)을 통해 인근 역곡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 50면 설치 추진
- '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국도비 33.1억 및 '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국도비 19.1억원 확보

• 개선효과

- 국내 최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공 신(新)공유경제 모델 창출
- 원도심 등 낙후지역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
- 단지 주변 불법주차 해소로 교통 흐름 원활 및 보행공간 확보로 주거환경 개선
-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로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조감도



〈부천여월LH〉



〈삼협연립3차〉

• 보도자료

경인매일

HOME > 경기뉴스 > 경기서남부

부천시,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세부협약 체결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6.24 11:39



부천시가 시청 만남실에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세부협약을 체결하며 제1호 마을주차장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사진=부천시)

(부천=김장운기자)부천시가 시청 만남실에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세부협약을 체결하며 제1호 마을주차장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번 협약은 작년 4월 체결한 기본 협약에 이어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방극욱)·한국토지주택공사(LH)·시(市)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부 협약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방극욱 조합장, 장중우 LH인천지역본부장이 참석하여 역할 분담, 사업비 부담·지급·정산 방법, 임대료 산정·지급 방법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했다.

전국 최초 민간공이 협력하여 조성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제1호는 공동주택(112세대), 임대주택(29세대) 및 공영주차장(85면)을 포함한 복합시설물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하2층 부분의 토지를 제공하고, LH는 정비조합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부담하며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은 여월동 9-28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있다. 주차장 완공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여월LH참여형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6억 중 33.1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세부협약은 원도심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기능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이라며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 사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운 기자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민관 협력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평택시 건축허가과
권 오 철
(032-625-377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사업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신 전임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살고자 하지만 각자의 이유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는 전국 2위의 인구밀도를 자랑하지만 중·상동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은 주택이 노후되고 기초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차장 부족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부천시는 법 신설(2018년 이후) 이후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 사업 80%인 160여 구역이 진행되고 있어 정비사업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전국 최초 민-관 공동건립 사업인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 어려운 사업을 왜 하는지? 굳이 민간이랑 공동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등 많은 의문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렇게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고 안주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축허가과(031-8024-4160)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건축인허가 1회 협의 후 재협의 생략, 새움터 활성화〉

• 개선배경

- 건축인·허가 신청 시 상시적 보완 및 재협의, 협의부서 지연회신, 담당자 별 업무편차 등 원인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민원인 불편 고조

▶ 건축인허가 절차 단축 및 매뉴얼 제작으로 신속·정확 업무처리 가능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건축부서에서 설계자와 협의부서 간 전달 역할 수행으로 보완요구 시 재협의(문서 발송)요청이 있어야 처리 가능 (설계자 ↔ 건축부서 ↔ 협의부서)	(절차단축) 재협의 절차 생략(8단계 → 5단계로 단축) In-out창구 통합, 설계자 ↔ 협의부서 직접 연락하여 재협의 없이 결과 회신
○ 건축복합민원의 협의부서가 새움터에 협의 의견을 입력하기 전까지 건축부서 및 설계자는 진행상황을 모름	(보완감축) 각 부서 새움터 상 협의 간에 최초 검토, 보완요청, 최종결과 입력 등 진행과정을 공유하여 소통 및 투명성 제고
○ 근무경력, 법령해석 등 담당자별 업무편차 존재	(편차감축) 주요 체크리스트 및 반복 보완사항 등을 기재하여 건축 인허가 매뉴얼 제작,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실현

• 개선효과

- 건축허가 소요일수 단축 ('18) 57일 → ('19) 26일 → ('20) 22일
- 보완 요구 횟수 감소 ('18) 1.81회 → ('19) 1.35회 → ('20) 0.98회

○ 건축인허가 프로세스 개선(8단계→5단계)



○ 세움터 활용(진행사항 공유)

설계자	건축허가·신고	세움터
건축부서	인허가 관련 협의부서 협의 요청	8시간 이내
협의부서	① 보완사항 설계자에 직접 연락, 세움터 입력	8시간 이내
건축부서	② 보완사항 취합하여 총괄 보완사항 입력	5일 이내
설계자	③ 보완사항 제출(건축부서 재협의 문서 없이)	보완기한 내
협의부서	④ 처리가능, 조건부처리, 불가 중 택1 결과 회신	처리기한 내
건축부서	건축허가·신고 처리 / 법령위반사항 설계자 행정조치	협의 완료 후 1일 이내



경기도 평택시 건축허가과 **조영주** (031-8024-4160)

직원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낸, 신속 행정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은 주관부서인 건축허가과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러 직원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주관부서, 협의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462)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 절차 간소화〉

• 개선배경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개요〉

- 내 용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대 4년) 지원
- 대 상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신용 1~9등급(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중인 자, 면책·파산 후 5년 미경과자 등 제외)
- 추진방법 : 道-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간 3자 협약을 통한 지원

- 신청자는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이상 소요됨
 - 신청자격유형 중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경기도에서 발급한 추천서가 없더라도 농협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이자지원 대상 여부 판단 가능
 - ⇒ 지원 절차 간소화(국민·영구임대주택)를 통해 기간 단축 및 신청인의 편의 증진 필요

〈기존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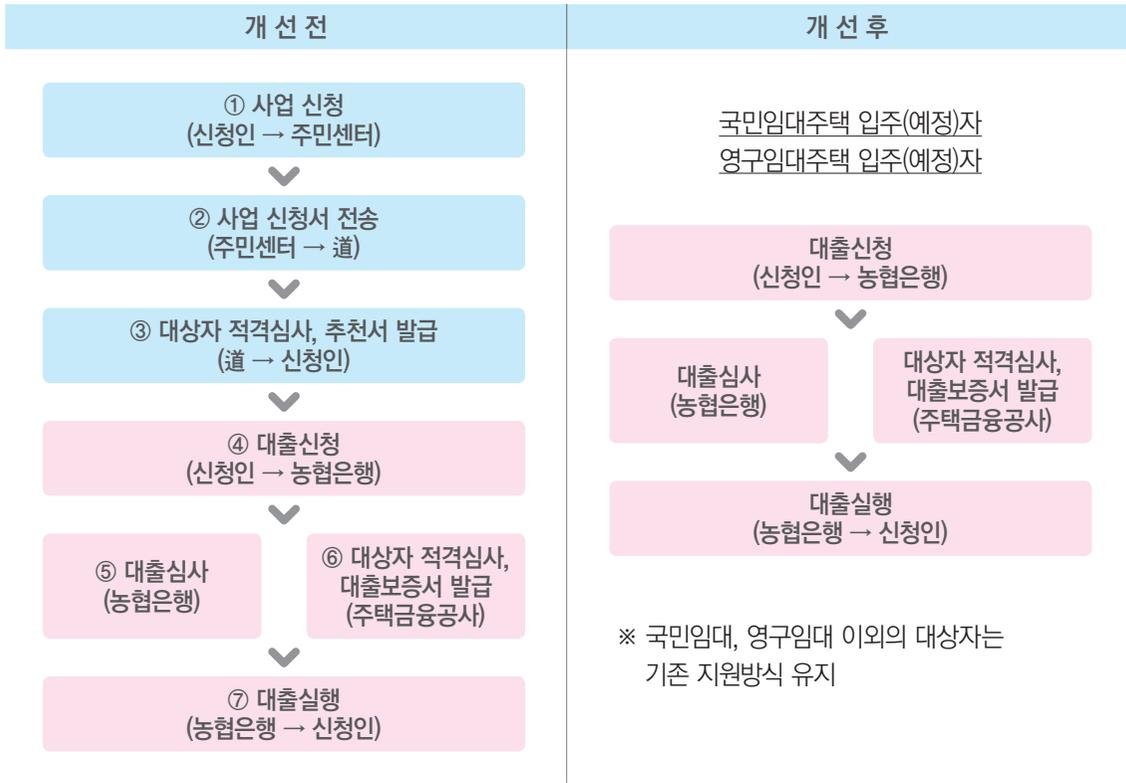
- ① 사업신청(신청자→주민센터), ② 신청서 전송(주민센터→道), ③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道→신청자), ④ 대출신청(신청자→농협은행), ⑤ 대출심사(농협은행), ⑥ 보증서 발급(주택금융공사), ⑦ 대출실행

▶ 사업 대상자 중 축소할 수 있는 범위 내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개선내용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한해 ①~④단계 절차(경기도 추천서 발급 절차) 생략
 - (기존)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소요
 - (변경) 사업대상자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道の 추천서 발급 절차를 생략
 - ▶ 신청~대출실행까지 약 5~10일이 소요, 논스톱 대출 상담 가능

· 개선내용



· 개선효과

- (기간 단축)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신속 처리 가능(20일 소요 → 5~10일 소요)
- (효율성 향상) 은행에서 바로 상담 및 대출 신청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



〈추진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031-828-2931)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 개선배경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분리해야 영업신고 가능함
- 쇼인쇼п(shop in shop)형태로 운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 타 업종과 공중위생영업을 동시에 신고(미용업 공동 사용 제외)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 설치 또는 방·벽·층 등으로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된 경우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공사비 발생 등 영업주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만 야기

▶ 현실에 맞지 않는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건의

〈미용업 현황〉

- 미용업은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0% 이상 차지하며, 전체 미용업의 22%가 경기도에 위치
- 경기도 내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는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6% 이상
- 의정부시 공중위생업소 2천여개 중 미용업은 1천 4백여개로 70% 이상 비중 차지

※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기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는 분리되어야 함	-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는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함 →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장소 구분

• 추진과정

- 의정부시는 우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를 개최, 해당 건의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추진
-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고 합동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

-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분리' 규정을 '구획이나 구분'으로 완화하도록 개정 ('19.12.31.)

• 개선효과

- 흡인습 등을 포함한 별도의 분리 없이 구획 또는 구분만으로 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확대로 일자리 창출 가능 및 영업주의 편의 도모
- 시민의 편의증진과 수요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흡인습 매장 증가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신고 건수 증가
- 기존 벽이나 방으로 구분되어 있던 공간에 다른 사업자 입점 시 기존 설비 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폐기물 처리 등 낭비 절감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적 확대 적용되어 많은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파급효과 실현



〈옷가게 내 커튼으로 구획한 네일숍〉
영업신고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영업이 불가함



〈미용실 내 가발판매〉
구획만으로 미용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

기업애로 해소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2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31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34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36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38

〈추진부서〉 경기도 수원시 법무담당관(031-228-2740)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준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 개선배경

-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민, 기업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정

▶ 현장에서 목소리를 청취하고 답을 찾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개선내용

① 전국 최초! 수원일반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

개 선 전	개 선 후
- 지정·관리권자 이원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1블록 경기도지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3블록 수원시장</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2블록 경기도지사</div> </div>	- 지정·관리권자 통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 10px; text-align: center;">1,2,3블록 수원시장</div>
- 1·2블록 경기도 승인절차 기업민원처리 : 97일	- 기업 민원처리기간 : 4일 *기업민원처리 93일 단축

- 2017년 5월 수원산업단지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시 건의 → 2018년 산업집적법 개정추진(실패)
 → 2019년 1월·2월 산업단지 지정권·관리권 통합 가능 여부 질의(가능회신) → 2019년 5월 경기도와 협의 추진 → 2019년 10월 수원산업단지 ①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관리 기본 계획(변경) 고시로 지정권·관리권 통합완료

② 벤처기업 유효기간 확대

개 선 전	개 선 후
- 2년	- 3년 유효기간 1년 연장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 절감

* 벤처기업확인제도?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

- 2017년 4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와의 현장 토론회 시 건의 → 2017년 7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건의 → 2019년 관련 규정 개정사항 수시 확인 및 요구 → 2020년 5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완료

③ 드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개 선 전	개 선 후
- 드론비행자격자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 제외 - 1인 및 소규모 기업 대표자는 연구, 생산 활동을 함께 해 소규모 기업 상황을 반영 못함	- 드론비행자격자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 포함 - 자격증 소지한 직원 채용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애로 해소

- 2019년 2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시 건의 → 2019년 3월 경기도, 국무조정실에 건의 → 2019년 7월 중기부 검토결과 회신(수용) → 2020년 3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 기준 고시

④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개 선 전	개 선 후
- 기업부설연구소 칸막이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구공간 30㎡이하	- 기업부설연구소 칸막이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구공간 50㎡이하

- 2019년 4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시 건의 → 2019년 4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건의 → 2019년 10월 과기부 검토결과 회신(수용) → 2019년 12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 준다.

<상상이 현실로, 꿈꾸는 적극행정>



수원시 법무담당관
박 명 희
(031-228-2739)

내실 있고 체계적 협력으로 규제애로 적극 해결하다

염태영 시장님 역점시책인 수원시 규제합리화 적극행정은 시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 개혁 토론회(2014~2018 26회)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2018~2019 83회)를 2014년부터 109회 운영하여 개선규제 229건을 관련부서, 중앙부처에 건의 협력하여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는 5년간 규제개혁 발자취 규제개선 우수사례 70건을 담은 성과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과 공유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다

기업과 현장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성장 지원과 벤처기업, 드론, 부설연구소 등 기술혁신분야 규제애로 해소로 기업 투자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4회를 운영하여 6건 규제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꿈꾸는 적극행정 다짐하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일생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장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과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이 개선·해결될 때마다 공직생활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규제혁신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규제개혁 꿈꾸며 적극행정을 위하여 끝임 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상의 기쁨! 모두와 함께 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오산시 지역경제과(031-8036-756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LH관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인하 추진〉

• 개선배경

-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내수 및 수출이 막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극복을 위해 무급 휴직 등 일자리 불안까지 확산됨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기업의 경우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임대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기준

▶ 임대기업의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인하 예외요건 - ① 산업침체, ② 고용여건 악화, ③ 재난 등이 발생하여 특별지역으로 지정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인하 예외요건 - ① 산업침체, ② 고용여건 악화, ③ 재난 등이 발생하여 특별지역으로 지정선포 - 특별지역 지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간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

- 가장2산업단지 임대기업(21개 기업) 임대료 인하

• 추진과정

- 2020.03.23. : 산업단지 임대기업 임대료 인하 건의(오산시 ⇒ 경기도 산업정책과)
- 2020.08.11.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국토교통부)

• 개선효과

- 인하율 및 기간 : 6개월간 25% 인하('20.7.1.부터 적용)
- 경기도내 3개지구 31필지 임대료 인하 : 31필지, 573백만원 인하(오산시 27필지, 448백만원)

붙임 1) 관련법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개 선 전	개 선 후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p> <p>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p> <p>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p> <p>다.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포한 경우</p> <p>2. 임차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p>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p> <p>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p> <p>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p> <p>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p> <p>라.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포한 경우</p> <p>2.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p>

개선 전	개 선 후
	<p>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 관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붙임 2)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 글자크기 | 음간격 | 인쇄하기 | 취소

LH 임대산단' 임대료 6개월 인하...경기도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7.02 10:08 수정 : 2020.07.02 14:2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6월26일 이사회를 열어 관리하는 임대산단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월 수출기업 3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3월30일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임대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건의에 적극 공감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산가정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 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규모는 5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 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있다. 유광일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등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추진부서〉 경기도 의왕시 교통행정과(031-345-3313)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의왕시-LH협업,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한 해결〉

• 개선배경

- 의왕포일인텔리전트 입주기업들의 주차공간 절대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 발생과 주차난으로 IT개발 인력 등 기업의 고급인력 수급이 어려워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2012년 택지개발 준공 이후 학교용지가 미매각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토지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

▶ 오랫동안 방치된 학교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건의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목적(학교용지) 외 사용 불가 -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용도 변경 불가	- 유연한 법 적용(공익을 위한 목적사용)으로 용도 변경 없이 임시주차장 조성 및 기업 주차난 해소

• 추진과정

- LH공사(학교용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협의: 2019. 5~7월
- 기업체의 주차장 이용 등 의견 수렴: 2019. 7. 11.~7. 22.
- LH공사(학교용지) 부지 무상사용 MOU 체결: 2019. 11. 6.
 - ※ 의왕시: 공용주차장 사용(6,500㎡) 등, LH공사: 재산세 감면 등
- 주차장 조성 반대 다수민원 접수(35건)로 주민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설명 설득: 2019. 11월
 - ※ 출입구 변경, 안전관리,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 주민편의시설 요구 등
- 주차장 조성 공사(5,500㎡, 136면): 2019. 11. 8.~2020. 1. 30.
- 주차장 운영 개시(136대): 2020. 3. 16.

• 개선 효과

-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일부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 장기 방치된 유휴지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지 주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조성
-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기업민원 조기 해소 및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 언론 보도

의왕시-LH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

포일2지구 주차난 해소 기대
부지면적 4,800㎡, 120면 규모

의왕시와 LH는 7일 양측 간 체결한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이...
의왕시와 LH는 7일 양측 간 체결한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이...
의왕시와 LH는 7일 양측 간 체결한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이...

경기신문

2019년 11월 07일 (목)
수도권 09면

의왕 포일2지구 만성 주차난 다소 해소 기대

사·L·H, 학교용지 주차장 활용
의왕시에서 시립농협 전산센터 등 임...
의왕시에서 시립농협 전산센터 등 임...
의왕시에서 시립농협 전산센터 등 임...

• 관련 사진



<정비 이전>



<주차장 정비 후>

〈추진부서〉 경기도 광주시 기업지원과(031-760-4805)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 개선배경

- 광주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권역으로 중첩 규제되어 건물 증축 어려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부족한 공간 활용
- 조례 허용 가설건축물 재질 : 천막·유리·플라스틱(풍수해 및 화재에 취약)

▶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제한적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천막, 유리, 플라스틱)	- 강판재질의 창고를 확보함으로써 주요 자재 등을 별도의 증축 없이 화재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 추진과정

- 2016년 조례 개정 추진(2회) → 2017년 국토부 관원회신 결과 추진 불가
- 건축조례에 신규 조항 추가 추진 → 2020년 3월 건축 조례 개정 완료
 - 고문번호사 자문 의뢰, 국토부 관원 질의(2회), 건축과-기업지원과 부서간 실무협의



〈가설건축물(천막)〉



가설건축물(칼라강판)

• 개선효과

○ (경제) 불필요한 가설건축물 재설치 비용(6천여개 기업 2,970억원) 절감

기준(330㎡×10m)	금액(천원)	내구연한(년)	사용후처리	화 재	태풍, 대설
천막	26,500	4	산업폐기물	취 약	붕괴,누수우려
칼라강판	30,000	12	고 철	안 전	천막보다 안전

〈가설건축물 재질 비교표〉

○ (환경) 가설건축물 교체 시 발생하는 폐 천막 등 산업폐기물 처리 최소화, 환경개선

• 개정조례 광주시 건축조례 제25조

제25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5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 -----</p> <p>2. 공장(제조업소 포함), 창고에 설치(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것 포함)하는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써 경량철골조(파이프조에 한정한다)로 지지하는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p> <p>3. 내지 6. - 생 략 -</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가설건축물</th> <th>기타</th> </tr> <tr> <th>용도</th> <th>구조 및 재질</th> <th>규모</th> <th></th> </tr> </thead> <tbody> <tr> <td>창고용 건축물 (1)</td> <td>·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단열재가 없는 강판</td> <td>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하</td> <td>·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 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까지 건축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td> </tr> <tr> <td>창고용 건축물 (2)</td> <td>·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td> <td>제한없음</td> <td>·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td> </tr> </tbody> </table>	가설건축물			기타	용도	구조 및 재질	규모		창고용 건축물 (1)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단열재가 없는 강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하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 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까지 건축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	창고용 건축물 (2)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제한없음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가설건축물			기타														
용도	구조 및 재질	규모															
창고용 건축물 (1)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단열재가 없는 강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하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 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까지 건축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														
창고용 건축물 (2)	·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제한없음	·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허용〉

· 개선배경

○ 코로나 등 의료폐기물 폭증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포화(처리능력 한계 봉착)

- 국내 소각시설 단 13개, 대부분이 노후시설이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서울, 전북, 강원, 제주 소각시설 없음)

- 소각시설 증설 및 확장은 님비현상으로 지난

- 의료폐기물은 병원 내 멸균이 가장 안전, 그러나 대부분 수백킬로 이동하는 현실.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병원 내 장기방치, 불법폐기, 운송 중 보관불량·차량사고 등으로 2차 감염 위험 확산

※ 국내 멸균분쇄시설 : 분당 서울대병원에 1곳 유일 (규모 (W)20m×(D)6m×(H)5.5m,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 관련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임시허가 및 법령 개정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m 범위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 이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 엄격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9. 22. 시행 2020. 9. 25.>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 규제 개선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건의 개선완료

- '19.1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
- '20. 3. 행정안전부 건의
- '20. 5. 교육부 개정수용
- '20. 9.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신설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세부기준 완화 건의 : 병행 추진 중

[현행] 멸균 "방법" ⇒ [개선] 국제기준에 따른 멸균성취도 "결과"

⇒ 다양한 형태의 중소형 멸균분쇄시설 개발/판매 가능

- '20.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
- '20. 3. 행정안전부 건의
- '20. 5. 환경부 중장기 검토의견
- '20. 6. 시군순회간담회 통해 국무조정실 재건의
- '20. 7. 중소기업음부즈만 재건의
- '20. 10.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상정



'19. 12. 기업현장 방문
규제샌드박스 지원 및 과제 초안 작성(행안부 건의)



'20. 6. 시군순회간담회
과제 보완, 국조실·중기부 재건의

• 기대효과

-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포화에 대한 유일한 대안
- 병원 내 및 지역사회에 대한 2차 감염 예방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절감(톤당 백만원 이상)을 통한 의료 수가 합리화
- 다양한 멸균분쇄장비 개발(신산업)을 통한 거대 의료폐기물 처리시장 진입
 - 2018년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장 규모(2019년 11월 26일, GLOBE NEWSWIR)
세계시장 1,177억 달러(135조원) / 국내시장 2,000억원

• 언론보도

-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경기도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층해소
(2020. 9. 23. 중소기업뉴스, 한국경제, 아주경제, 경인방송 등)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허용, 탈카페인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신설은 안양시 추진하여 개선한 과제임.

- 병원계 골칫거리 '의료폐기물' 해소되나... 멸균분쇄기 허용
학교구역 근방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멸균분쇄시설 설치 재허용... 병·의원 의료폐기물 숨통
(2020. 9. 25. 메디컬타임즈, 보건뉴스, 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 등 다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43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저탄소 캠핑장 조성	44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46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50
친환경 소재의 글램핑용 돔텐트에서 안락한 야영을 즐긴다	52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입을 위한 101번의 프로포즈	54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경기도와 함께 규제의 문턱을 넘다	58
기사회생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60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64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3중세트

01

규제신속확인

기업이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하여 회신받는 제도

02

실증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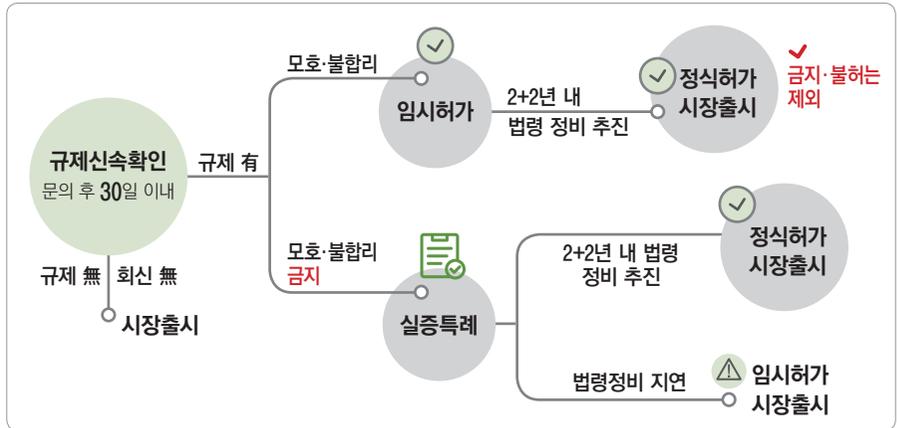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

03

임시허가

안정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先 출시허용, 後 정식허가' 제도

○ 규제샌드박스 절차



규제샌드박스 사례

- **신속확인** : 자율주행로봇을 이용한 배달서비스 시장출시가 가능할까요?
관련 규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
- **실증특례**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기존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차)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
 - 특례 : 실증특례를 통해 일정 조건하에서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해짐
안정성 검증을 통해 운행기준 수립 및 법령정비 추진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287)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저탄소 캠핑장 조성
〈사용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을 재이용하여 파워뱅크 제작 규제특례 성과〉

• 개선배경

- 현재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약 200여개 보관중이며,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8만여 개가 배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치된 상태로 창고에 보관 중이었음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용량이 70% ~ 80% 가량 남아있어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이 가능함에도 각 지자체로 반납 후 보관만 하여 환경오염 및 보관 문제가 발생

〈피해사례〉 (주)굿바이카에서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하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배터리 재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매각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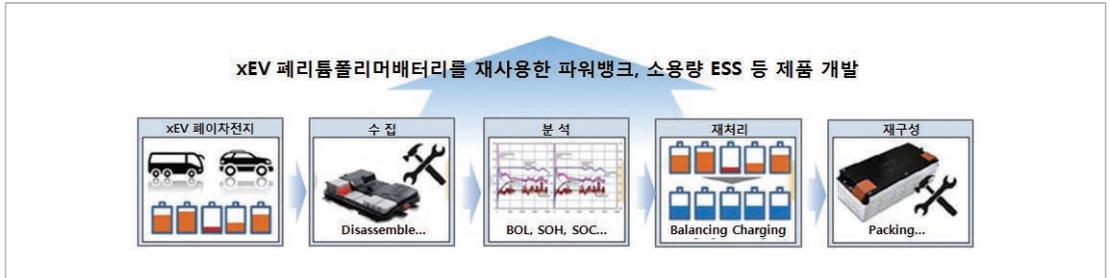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5조 1항(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안전인증의 신청 등)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폐배터리 재이용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캠핑용 파워뱅크로 제작·사용이 가능하도록 2년간 실증특례 승인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를 받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이용 캠핑장 파워뱅크 제작이 가능하게 됨.



• 추진과정

- ('20. 6.9.)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굿바이카 → 대한상공회의소 첫 접수)
- ('20. 7월 초) 산업부 답변 : 환경부·지자체의 배터리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 이행 요구
- ('20. 7.10.)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굿바이카 → 규제개혁담당관 문의)
- ('20. 7.15.) 굿바이카 현장방문 및 면담
- ('20. 7.1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회의(1차)
- ('20. 7.20.)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위한 관계 시군 모집요청
- ('20. 8.11.)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회의(2차)
- ('20. 10.19.)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 개선효과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 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9년에는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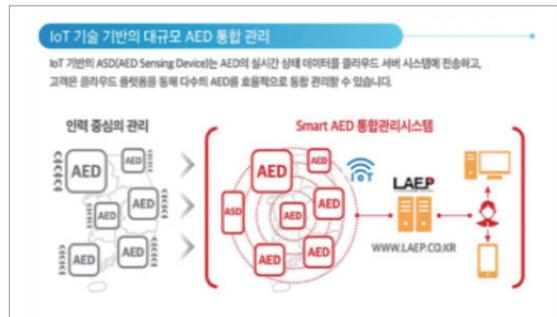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사례〉

· 개선배경

- 세계 1위 사망원인인 급성 심정지, 국내에도 연 3만건 이상이 발생하며 치사율은 92%, 하루에도 75명 정도가 급성심정지로 사망
- 유일한 생명줄은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최근 경기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조사 결과 3대 중 1대가 미작동하는 등 매년 관리실태 문제가 심각함
- 안양시 루씨엠(주)가 IoT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유일 기술(일명 ‘Smart AED’)을 개발해 냈으나, 타사 의료기기 융합제품이어서 규제로 5년간 시장 진입 불가



Smart AED 제품 구성도
AED(타사제품) + 스마트 보관함(센서부착)
+ IoT 단말기 + 클라우드 기반 관리플랫폼(소프트웨어)



Smart AED 제품 원리도
(현재) 인력 중심의 월 1회 직접점검 (응급의료법)
→ (신기술) IoT기술 기반 대규모 AED 통합관리, 상시점검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장구역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 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공장구역 부대시설인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만 판매가능. 타사 제품인 의료기기(AED) 융합판매 불가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어렵게 시장 진입했으나 이번엔 조달 규제로 제품의 주 수요처인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 불가, 코로나 위기로 섰다운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 2인 이상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공급계약 불가로 조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근거 없음

▶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Smart AED’의 시장 진입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인 본사와 근린생활시설인 지점에서도 타사 융합제품 판매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인 본사에서 타사 융합제품 판매 가능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시허가 국내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공공기관에 조달 불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 가능 ※ 조달청 혁신물 등재 -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 수의계약 대상

-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지원 : 실시허가 국내 1호 성과로 시장진입
 - 기업이 큰 행정적 부담으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진입 좌절사례 많음
 - 시가 기업의 신청서 작성, 법 검토 및 대응논리 개발, 부처협의, 안전성숙 조력, 위원회 대응, 실증 지원 및 시장 진입까지 전 과정 원스톱 지원



'19. 1. 기업현장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



'19. 1.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조실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



'19.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 샌드박스 전략회의



'19.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회 의약관리팀장 변론



'19.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회 동안보건과장 변론



'19. 4. 산업부 실시허가
샌드박스티م, 기업, 안양시

○ 조달규제 개선 언론 공론화



KTV 대한뉴스 '20. 2.
"개발하고도 판매 어려워" 각주구검 규제타파



산업방송 채널 '20. 2.
규제 개선이 길 열리고, 기할법은 성장 발판 마련

○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6개 과제, 13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 수의계약 대상 포함 건의
응급의료법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도 개선 등 6개 과제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음부즈만, 시장군수협의회 등 13회('18. 10. ~ '20. 10.)

○ 혁신조달 도전

- '20년 최초 시행 조달청 수요자제안형 도전적 과제 공모 선정('20. 4.)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플랫폼」
- '20년 제4차 혁신시제품 테스트 신청('20. 10.)
안양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 Smart AED 테스트 시범사업('21년 상반기 계획)

○ 전국 최초 건물 외부 공공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범 운영 준비 중

- 버스정류장, 공원, 체육시설, 도시재생 지역 등



• 개선효과

- Smart AED, 세계 유일 기술 18조 규모 의료사물인터넷 세계 시장 진입
 - 안양시 규제개선 성과 언론보도를 보고
 - 필리핀(동남아 세계 최고 성장률 시장)에서 거래 제안, 납품 완료



- Smart AED, 포스코 등 대기업,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납품
 - AED의 실시간 정상작동 확보를 통한 급성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내 생존율 제고
 - 생존율 최대 10배 이상 제고
 - 건물 외부 테스트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야간, 새벽 급성심정지환자의 생존율 제고
 - 세계 최초 AED 미작동의 다양한 에러사유 근거확보와 건물 외부 테스트를 통한 AED 관리의 세계적 표준안 제시 및 현행 응급의료법 상 AED 관리 제도개선의 근거 마련
 - 신산업 규제혁신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전파
 - 전국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기업의 변호사처럼 전 과정 밀착 지원
 - 혁신조달의 선제적 활용으로 기업의 초기 공공판로 및 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지원
 - 전통적 규제개선 방법을 넘어선 선제적,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 도입, 집요한 노력
- ※ 정세균 국무총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 시 총리 칭찬사례



안양시장 최대호 전문가 기고
「규제 샌드박스의 전문성,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현장성
시너지를 위해」 국가산업융합센터 웹진 '19.6월호



시장 주재 규제헌담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성과 공유('19. 9. 6.)

- ICT 융합 신기술에 대한 규제 모델을 제시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반 마련

〈추진부서〉 경기도 시흥시 첨단도시조성과(031-310-3741)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의 규제특례 성과〉

• 개선배경

○ 2019. 11. (주)만도 로봇플랫폼팀, 자율주행 순찰 로봇 개발 후 시흥시 실증특례 요청



〈첨단 기술의 실증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고민〉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호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행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에 애로	- 2022년 3월까지 규제 유예 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 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 통과(‘2020.5.13.)되어 생명공원 산책로에 자율 주행 순찰 로봇 투입이 가능하게 됨



〈규제개선 내용〉



〈규제개선에 따른 공공서비스 준비 사항〉

• 개선효과

- 공공장소의 CCTV 사각지대와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활동하고 순찰 공백을 보완하여 사전 범죄 차단 효과, 시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기반 마련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실증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계획〉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287)

친환경 소재의 글램핑용 돔텐트에서 안락한 야영을 즐긴다 〈도가 컨설팅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승인〉

• 개선배경

- 야영(캠핑) 활동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은 야영시설을 경직된 개념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었음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 합성수지(HDPE) 재질의 돔텐트는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 되어있음

〈피해사례〉 해당 제품은 기존 천막텐트 대비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여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합성수지 재질의 조립식 돔텐트 제작 가능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돔텐트는,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작이 불가능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조립식 돔텐트 제작 및 판매가 가능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를 받아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글램핑용 돔텐트 제작이 가능하게 됨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 추진과정

- ('19.12.6.)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19.12.9.)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 ('20.1.29) 산업융합 규제실증특례 신청
- ('20.4.27.) 제1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 ('20.6.23.)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실증비 등 지원)

• 개선효과

- 기존 천막 텐트 대비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눈·비·바람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야영시설 제작·판매가 가능해짐
- 돔텐트 시장 출시가 가능해 집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입을 위한 101번의 프로포즈
 〈2020년 제1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및 지자체 실증 밀착지원 사례〉

• 개선배경

- 안양시 관내 기업 ㈜부동산포스 신제품 큐브TV* 개발
 -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안쪽에 설치하여 중개업소의 보유 매물정보를 표시하고, 영업시간 종료 이후 QR코드를 통해 고객 요청을 접수하는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부동산 매물관리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큐브TV)〉

- 옥외광고물법 및 광역지자체 조례 상 규제로 시장진입·테스팅 좌절
- 높은 규제 샌드박스 진입 장벽 직면
 - 유사제품 개발업체(선방(주))의 선 진입과 실증지역인 광역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의 반대로 규제 샌드박스 진입장벽 직면 : 실증지역 변경·실증규모 축소 위기
 - 기업과 샌드박스팀 간 초기 오해로 소통 장애 발생
- 지자체 실증 진입 애로 발생
 - 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승인 받아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특례 확인서상 '지자체 신제품 설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진입 애로
 - 규제특례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리부서의 저항

※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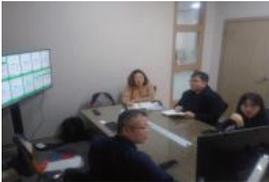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규제샌드박스 추진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한 시장 출시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신제품 실증 불가능	- 2020년 제1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0.4.) ※ 기초지자체 협의 조건부 실증 서울·경기400개소 설치 + 안양시·강동구 집중설치구역(100개소) ⇒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4조원 규모 국내시장 진입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전 과정 밀착지원*('19.12. ~ '20.4.): 215여 회
 - * 주요 지원사항 : 현장규제 확인, 샌드박스 진입을 위한 각종 대응논리 개발, 기업 대응방안 리딩, 위원회 핵심변론 지원, 원활한 실증을 위한 지자체 협의 조력
-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위한 「핵심 대응논리 개발」에 구심점 역할
 - 24회의 간담 실시(전문가, 기업, 안양시, 경제과학진흥원 협업 대응논리 개발)
 - 산업부·샌드박스팀과 기업 간 소통 조력, 절차의 원활한 진행 도움



'20.1.기업현장
경과원 박준식 연구원 협업

- * 현장규제, 허위매물 이슈
- * 선 실증 업체와 차별성



'20.1. 기업현장
고승진 변리사 협업

-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 증빙관련 대응



'20.1. 기업현장
송도영 변호사 협업

- * 지자체 반대 논리 법리적
- 대응 및 타협방안 논의



'20.2.기업현장
김진묵 교수 협업

- * 신제품의 환경적 안정성
- 및 규제의 애매성

- 안양시,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전문성 있고 창의적인 변론 지원」
 - 설득력 있는 변론지원으로 실증특례 규모 확대 : 서울·경기 200개소 ⇒ 500개소

〈市 주요 변론내용〉

- * 기업의 독자적 ERP 프로그램, 부동산 허위매물 방지,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기능 강조 통한 제품의 혁신성(차별성) 강조
- * 허위매물 이슈 및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방향성 등 공익적 논리로 부동산 과열지구인 서울·경기 실증 필요성 및 실증규모 확대 호소
- * 제품 지자체 현장 설치에 대한 안양시 관련부서 직원의 견해(안전성, 환경 위해 無)
- * 선 실증업체와 건강한 경쟁을 통한 기술고도화 및 업계 정화의 가능성 등

- 어렵게 샌드박스를 통과하였으나... 기업이 지자체 협의 이행 불가
 - 안양시, 지자체 실증 협의 밀착 지원 (31회)
 - 안양시 전국 최초 실증특례 집중설치구역 추진* ('20.7.~)
 - * 전문가 자문, 부서 협의, 지원예산 수립, 유권해석 추진, 시민 홍보, 공무원 인센티브 등
 - 기업과 함께 타 지자체 방문 설득, 지속적 연락과 편지 등 소통 시도
 - * 강동구 7차례 지자체 협의, 3차례 광역지자체 협의, 3차례의 부처 유권해석을 통한 설득 성공
 - 설득을 위해 사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담당자를 설득하고, 실증 관련 중앙부처(산업부, 행안부, 국토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내 집중설치구역 실증 동의 성과



'20.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샌드박스팀, 행안부 협업
* 지자체 실증 관련 협의



'20.3.안양시 건축과
건축과, 만안동안전건축과 회의
* 집중설치구역 시행 협의



'20.6.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설득
* 집중설치구역 시행 협의



'20.6.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설득
* 집중설치구역 시행 협의

- 14개 기초지자체 대상 큐브TV 실증 협의('20.9. ~ '20.10.)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에 부여된 지자체 동의 조건 완화 추진('20.11.)
 - 산업부(1), 샌드박스 전문가(3), 기업(3), 안양시(2) 합동간담 공동 대응방안 모색
 - 다양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조건의 적법, 타당 여부 법률자문

• 개선효과

- 디지털사니지는 정체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 HW, SW, 콘텐츠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의 성장기여, 4조원 규모 국내 시장 진입

구분	세계(억\$)					국내(조원)				
	'14	'16	'18	'20	GAGR	'14	'16	'18	'20	GAGR
HW	80	97	116	142	10.1%	1.37	1.87	2.31	2.72	12.1%
-디스플레이	60	73	88	106	9.9%	1.25	1.70	2.09	2.44	11.9%
SW/서비스	20	25	31	40	12.6%	0.15	0.22	0.30	0.39	17.6%
광고 / 콘텐츠	52	71	99	132	16.7%	0.36	0.45	0.69	0.87	15.9%
합계	151	193	246	314	12.9%	1.87	2.55	3.31	3.97	13.4%

* 출처 : 과기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대책('15.12)

- 허위매물 방지를 통한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다양한 전문가 활용 및 기업 시장진입을 위한 지자체 협업의 수범사례
- 신기술 테스트를 통한 근거 확보로 디지털사니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내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유도를 통한 혁신성장 및 전국적 파급효 기대
- 비대면 디지털 경제/ ICT 기술 융복합 촉진으로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2020. 12. 대한민국 전자전 참가(KES)〉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

© 박성우 기자 | © 승인 2020.06.01 09:28 | © 9컷0

| 부동산포스 박성우 대표



〈2020. 6. 월간인물〉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287)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경기도와 함께 규제의 문턱을 넘다 〈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 개선배경

- 푸드트럭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기동성 및 다양한 상권 확대가 가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료 보관, 식품조리, 세척 공간에 제약이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 푸드트럭의 영업 환경상 식품 전처리 및 1차 조리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푸드트럭 영업신고 체계 하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등록이 불가능

〈피해사례〉 푸드트럭 공유주방은 주방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푸드트럭 사업자의 위생적인 식품가공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관련법에 따른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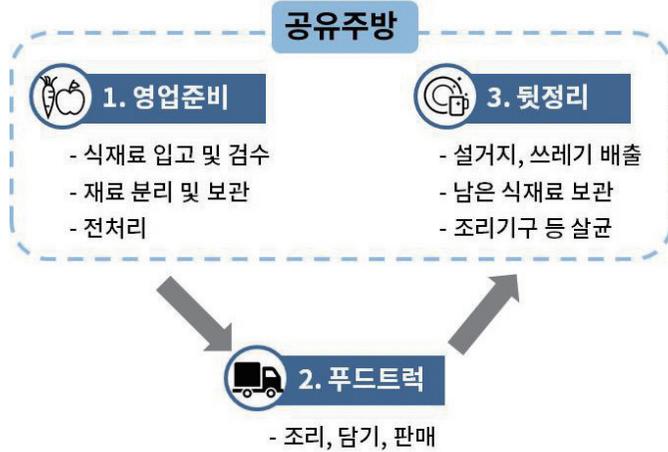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제공 가능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① 푸드트럭이 아닌 곳에서 조리 금지 ② 한 개 주방 다수 영업자 공유 불가	① 푸드트럭이 아닌 공유주방에서 조리 가능 ② 한 개 주방 다수 영업자 공유 가능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특례를 받아 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가 가능해짐

공유주방 업무 프로세스



• 추진과정

- ('20.2.2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20.3.27.)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신청 (규제있음 회신)
- ('20.4.29)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회의
- ('20.5.8.)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
- ('20.6.30.)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 ('20.8.2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실증비 등 지원)

• 개선효과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품질 높은 식품을 소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기사회생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신기술 신호등 램프 성능평가 규격 신설을 통한 시장 진입〉

· 개선배경

○ ㈜필오나,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개발 및 특허 등록

* 조도감응방식 LED신호등 : 신호등 램프별로 부착된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조도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신호등의 광도를 조절 (전력량 절약(50%) 및 최적의 시인성 확보)



〈광도 센싱 디밍〉



〈감지 센서의 위치〉



〈주간 운용 (100% 광도)〉



〈감야간 운용시 (50 % 광도 디밍)〉

○ 신기술 성능평가 규격이 없어 7년 동안 시장 진입을 못했고 사장 위기에 처함

※ 관련규정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2011.11.11.)」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를 통한 시장 진입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5.6 야간 조광제어 (권장사항) - (2) 이때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조광제어 상태로 설정되면 신호등의 밝기는 지정된 범위로 감소되어야 하며, 조광제어 해제 시 신호등의 밝기는 조광제어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5.6 야간 조광제어 (권장사항) - (2) 조광제어 방식 - ① 제어기 방식: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에서 조광 제어상태로 설정되면 신호등의 밝기는 지정된 범위로 감소되어야 하며, 조광제어 해제시 신호등의 밝기는 조광제어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② 조도감응방식 : 신호등 외부에 설치된 조도 센서가 야간환경을 인식하면 신호등의 밝기는 지정된 범위로 감소되어야 하며 주간환경으로 인식될 시 신호등의 밝기는 조광제어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기준조도 및 허용범위 1,000LX±10%)



〈'19. 3. 규제샌드박스 기업 간담(전문가)〉



〈'19. 3.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작성 지원〉



〈'19. 12.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지원〉



〈'19. 12. 규제샌드박스 대응방안 논의(전문가)〉

- ('19. 2.) 현장 규제 발굴 및 규제샌드박스 안내
- ('19. 2.) 산업융합 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 신청 및 철회* * 근거자료 미비
- ('19. 3.) 행정안전부 네거티브 규제혁신 과제 건의
 -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규격 신설 건의
- ('19. 4.)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재건의, 경찰청 직접 협의 병행
- ('19. 5.) 기업 신제품 테스트 자료 등 정량적 객관적 평가자료 마련 조력
- ('19. 7.) 경찰청 규제개선 불수용
- ('19. 10.) 경찰청 신제품 시장진입 불가 회신
- ('19. 12.) 산업융합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도로교통공단 추가 테스트 추진
- ('20. 3.) 행정안전부 재건의
- ('20. 4.) 중소기업음부즈만·국무조정실 재건의 ⇒ 경찰청 개정 수용
 - ※ 신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신호등 외함 난연성 기준 완화 병행 추진 중이며
 - '20. 12. 경찰청 김다희 경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수용함('21.초 개정 전망)
- ('20. 5.)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개정완료, 공시 : 규제개선

- 〈규제개선 노력〉 -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임시허가) 신청 추진 : 2회
 -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 73회(신청서 작성·보완, 샌드박스 대응논리 등)
 -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 5회(행안부, 국조실, 중소기업융합부즈만)
 - 기업·개발진·전문가 간담 및 소통 : 212회
 - 경찰청 담당자·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 규제소관 담당자 업무협약 : 12회

• 개선효과

-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2,000억 규모 국내 시장 진입
- 친환경·전력 최대 50% 절감, 유지보수 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그린뉴딜 선도
 눈부심 방지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최적의 시인성 제공, 도로교통 안전 확보

규제개혁을 선택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031-8045-2211)

작년에 이어 안양시의 규제혁신 테마는 또! 생명입니다...

전국 최초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 등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대면 신기술의 규제를 해결하고 세계 유일 기술을 18조원 규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로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2년 연속 경진대회 전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 규제개혁에 늘 전폭적이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경기도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한 지 어느덧 만 3년이 넘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어렵고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바로 이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고, 과감하면서도 집요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장 속에 다양한 스승을 만나야 하는 규제개혁은 참 매력적인 분야기도 합니다.

강요된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확한 인식을 위해 더욱 집중하고 깊이 공감해야 하며 복잡한 의사소통 능력과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회복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휴먼스킬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진정 시민을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안양시의 지난 3년은 선택과 집중의 해였습니다. ‘사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선택했습니다. 치명적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원천기술 의료기기를 13조 시장에 진입시키기도 했고, 테스트차량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의 기준을 완화해 산업군을 10배 이상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실증 지원으로 모바일에 이은 제4스크린이라 불리는 디지털사이니지의 시장 진입을 도왔고,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센서형 조도감응방식의 LED 신호등 램프의 규격을 신설해 시장에 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63개 신호기 기업의 막힌 판로를 뚫어내기도 했고 코로나 19로 처리능력 포화 상태에 이른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다양하고 도전적인 길 속에 나의 방식이 아닌 시민 맞춤형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재인증으로 지자체 규제혁신의 기반과 프로세스도 꾸준히 다져 왔습니다. 인증과 더불어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적극행정 선도지자체까지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 저력은 무엇보다 시민을 향한 무모한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는 최태호 안양시장님의 강력한 관심과 비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지혜를 준 많은 스승들...그리고 보석같이 빛나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신 나의 어벤져스, 안양시 규제개혁팀에게 깊은 감사의 맘을 드리며 오늘도 시민과 기업을 깊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화성시 기후환경과(031-5189-6712)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 개선배경

정부 발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1. 17.)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 연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화성시는 수소차 보급에 앞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민간의 수소충전소 사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여러 이유 등으로 민간의 사업참여가 전무한 실정임
 〈수소충전소 구축상 한계점〉
 - 각종 법령상 규제로 인한 입지상 제한
 - 수소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업 경쟁력이 있는 도심 지역 설치의 어려움
 -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망 부족
- 이에 화성시는 선도적으로 현대 하이넷과 협약을 통하여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법상 공공청사 내에 설치가 불가능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화성시청)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건의

※ 관련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공공청사에는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	- 공공청사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수소연료공급 시설 포함

• 추진과정

- 2019.03.14. : 네거티브 전환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 2019.04.26.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건의
- 2019.04.~05.: 관련부서 협의 및 규제개혁안 보고
- 2019.05.21. : 규제개혁신문고 중장기 검토 답변
- 2019.06.~07.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과 1차, 2차면담(국토부 협의·조정)
- 2019.07.31. : 네거티브 건의과제 결과 회신(국토부 중장기 검토 의견, 소극적)

- 2019.09.~10.: 중앙부처(국토부) 법개정 필요성 지속 건의
- 2019.10.18.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화성시 → 경기도)
(질의내용) 규칙 개정 이전에 공공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착수가 가능한지
- 2019.10.2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한 : ~12.02.까지, ※ 법제처 개정 3~6개월 소요)
- 2019.11.07.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통보(경기도→화성시)
(회신내용) 규제의 면제 불가능,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시설 규칙」일부 개정령안이 확정·시행되어 효력이 발행한 이후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 2019.11.25. : 중앙부처(산업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산업부 화성시 방문)
- 2019.12.06.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법개정 지원 협조 요청
- 2019.12.19. : 중앙부처(환경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
- 2020.01.0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 공공청사 내 편의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선효과

- 수소충전시설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시설은 안전하다는 인식 제고
- 전국 공공청사 약 4,500개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그린뉴딜정책에 최적화 된 사례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가솔린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질소산화물 감축효과 발생

• 관련사건

화성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

☞ 송은경 기자 | ☞ 승인 2020.10.09 10:36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수질혁신센터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차여 사업으로는 최초 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8일 화성시 방교동 795동월 수질혁신센터에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시설물 화성시장과 장영학 수도관리과장, 유종수 하이넷(주) 대표이사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해 태이프 커팅식과 사업 경과보고,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동탄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보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국비 15억 원,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수소관련 기업이 참여할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의 15억 원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용량은 25kg/회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최소 50~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는 자체 테스트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일반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 테스트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질혁신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촌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총 3개의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물 화성시장은 "수소충전소의 친환경 수소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경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부서〉 경기도 성남시 물순환과(031-729-4182)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전국최초 비행안전 1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행위제한 완화〉

• 개선배경

〈현황〉 성남 하수처리장은 성남시 전역(판교제외)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29년간 운영함에 따라 시설 노후로 인해 과도한 수선유지비 및 시설개선비 등 막대한 예산 소요 또한, 하수처리장이 설치(1992년)되었을 때의 주변환경(논, 밭 등)과 달리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심지로 변모되어 인근주민 및 주요간선도로 이용자의 악취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

- 성남시는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하는 '성남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는 공공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재개발 순환주택,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그러나, 통합현대화사업 부지는 군사기지법 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 속하여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으로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임
-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특성상 배수구역 하류에 입지하여야 하나, 비행안전 1구역과 중첩되어 군사기지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

▶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건의

• 개선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개 선 전	개 선 후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금지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가능

- 군사기지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군부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한 결과, 지난 3월 군사기지법 개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추진과정

- 군부대 협의
 - 2018. 10. :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보고(T/F팀 구성 및 운영)
 - 2018. 10. : 비행안전1구역 저축에 따른 군부대(15비)협의
 - 비행안전1구역 내 지하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심의절차 이행 협의
 - 심의내용 : 작전성 검토 및 비행안전1구역 심의(15비 및 공군본부)
 - 2018. 11. : 비행안전구역내 행위협의 [성남시 → 15비]
 - 2019. 1. : 1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건의서 제출 [성남시 → 15비]
 - 2019. 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저축, 입지불가 통보 [15비 → 성남시]
 - 2019. 3. : 관련사항 재협의(법률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시 → 15비]
 - 그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고 기존시설을 포함한 완전지하화계획에 긍정적 검토의견, 군 심의절차 이행과정에서 법률개정 필요 사항 결정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 상정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계획 알림[경기도 → 성남시]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제출[성남시 → 경기도]
 - 2019. 5.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설명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요청[경기도 → 성남시]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제출[성남시 → 경기도]
- 중앙부처 협의
 - 2019. 3. ~ 2020.2. : 사업추진 및 법률개정 관련 간담회 다수 시행(국회의원, 성남시, LH공사)
 - 2019. 7. : 군사기지법 개정안 국회 상정
 - 개정안 국회 상정 후에도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개정 필요성 지속적 설명
 - 2020. 3. :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개선효과

- 전국 최초 비행안전 1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능(제도적 기반 마련)
- 행복주택, 재개발순환주택 및 창업지원 시설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성남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이나, 환경기초시설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부지를 이용한 공공개발 등 토지 이용효율 향상
- 기존부지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2,500명) 및 주거공급(3,000세대)
- 전국 11개 군사비행장과 군 접경지역의 군사시설에 관한 규제개혁 계기 마련

자료

중부일보

HOME 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권대성 | 승인 2020.03.08 17:31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재안서 접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업완료로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체계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업이다.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돼 29년째 운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sd1919@joongboo.com



23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오른쪽)이 협약서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LH)

[이슈아래에 이론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

LH는 23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수정구 북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는 1992년 준공된 후 하루 40만 규모의 하수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관원비율 증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겪어온 시설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과 관련 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남시는 센터를 수정구 태평동 단원동 인근의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옮겨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위례신도시와 북정지구를 잇는 '성남일자리 창출 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LH는 3000가구 규모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LH는 '성남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층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시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순환을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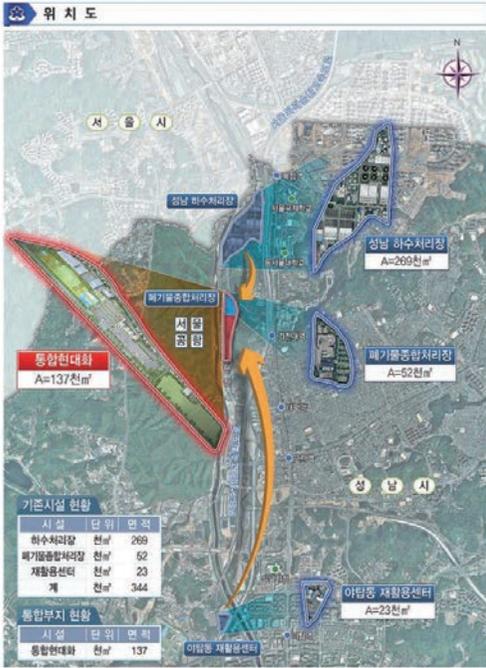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2025년 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해당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군사시설과 도포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기초시설 등 비행에 지장이 없는 공공시설은 설치가 가능토록 군사기지법 개정을 지원하면서 이번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LH측 설명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익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성남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현대화 사업



조감도 및 개발구상(안)



〈추진부서〉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7)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소극적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으로 전국 최초 공유수면에 점사용료 징수!〉

• 개선배경

- 한국전력공사, 「354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당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의제협외)’ →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 취득
과거 관행에 편승하여 반대급부적 성격인 송전선로 점용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5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표4] <도면#33>

▶ 점용료 징수를 위한 법령 근거 마련 및 행정소송 수행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상부공간 법령 및 개념 미흡으로 송전선로 허가시 부터 최근까지 길이(선,km)로 점용사용 징수됨. (점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20년 이상 관행 개선 필요) - 허가당시 부과하지 못한 점용료를 법령에 근거한 소급징수 여부(신뢰보호원칙 검토) - 송전선로 면적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선로 점용료 대상 중앙부처 법령 질의 및 점용료 산정에 대한 훈령 개정 - 공유수면법의 명확한 해석 및 적극적 법률 검토 (관행타파), 즉시 행정처분 - 3년간 적극적 소송대응(신뢰보호 위반여부) -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징수는 정당한 행정처분 판결(2019.10.8.) - 판결에 따른 한전과 현장 합동점검 및 측량

- 과거 소극적 행태를 탈피하여 불확실한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적극적 행정 행위를 통한 공유재(공유수면)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한 전국 최초의 사례 발굴

• 개선내용

- (국토관리적 측면) 공유수면법에 규정한 정당한 행정행위 전국 최초 실현
 - 공공재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갈되기 전 관리 실현
- (경제적 측면)
 - 2013년~2019년 공유수면 소급징수 점용료 250억원(향후 매년 약 40억원 부과 징수)
 - 21개 시군 적용가능 :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간 갈등 비용, 소송 비용 절감

• 보도자료

‘신뢰 보호의 원칙’의 희생양 市, 한전에 215억 소송 1심 ‘패소’

시, 2017년 개정 시행령 따라 월말 선하지 215억 점용료 징수
한전, “월말 이의 공유수면 점용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며 소 제기
담당자 행정처리에는 문제 없어... 市, “항소 할 것” 2심 결과 주목

안산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제기한 대부도 공유수면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시는 지난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점용료 215억5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내야 할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의 대처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정부(재판장 권덕찬)는 지난 1월 10일 대법 1심 선고에서 안산시가 지난해 3월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사용료 215억 5천522만8천7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은 관습을 내세웠다.

해당 소송은 시가 그간 한전이 대부도 공유수면에 설치, 사용해 온 송전철탑 41기의 월말 부지에 대해 부과해 온 점용·사용료 이외에 지난해 3월 한전 측이 제출한 도면에 의거해 총 47기의 철탑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공간(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해 남부 받은 비용을 한전 측에서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전은 월말 선하지의 점용료 부과에 대도시의 부과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뤄졌으며, 송전철탑의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잘못 선정되었고, 공유수면 점용료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가 부과한 법률상 근거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업무 규정은 해당 수산부고시로 시행된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재량준칙에 불과하기에 토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용료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한전의 주장은 한전 측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해 안산시가 한전에 지켜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한 점용료 부과보다 우선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까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과연 한전이 연산시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위한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시정조성위원회 열여섯 위 사건을 주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직자의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적법한 부과였기에 시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객기자 >>> 4면
이호영 기자 kiz@sanarimes.com.kr

〈보도일자:2019.6.18.〉

안산시, 공유수면내 송전선로 점용료 받는다

〈전국 최초〉 〈시화호·대부도 일대〉

한전, 市 상대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부과 적법’ 판결
매년 40억여원 세외수입 ‘추가 확보’ 시민위안 사업 투입 예정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게 됐다. 시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외수입 매년 40억여원 내역을 받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최근 받았다.

부과 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지난 2004년 설치한 월말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송전선로는 ‘345kV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16km 길이에 걸쳐 설치돼 영흥도와 대부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영기 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매년 주변 공

사지기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여원에 추경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 219억9천0213원 3월~2018년 5월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받았으나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의 적극 행정으로 송전철탑제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산/윤화섭 기자 kimd@kyeongin.com

〈보도일자: 2020.2.18.〉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확보



안산시 해양수산과
이 지 선
(031-481-2337)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복지부동, 탁상행정, 내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 등 이전 이런 비판적인 말은 옛말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규제는 안전·환경·미래자원 보존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혹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칙을 개선해야 할 때가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전기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의 불가피한 시설물이지만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과거 법령 미흡으로 공공재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 요청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전선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과거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는 전국에서 첫 사례로, 대형로펌을 상대하여 3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처분 전 법률자문이 부정적 임에도 소신 것 행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완전 패소하여 내외부의 질타에도 꺾끗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최종 점용료 징수권을 확보했다.

새로운 세원을 연간 40억 원씩 징수하게 되어 시 재정에 반영하여 우리시민을 위해 사용하므로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실패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기 때문이지만,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다.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문화관광과(031-940-4362)

관광안내 ‘챗봇’이 도와드려요
〈기초지자체 최초 인공지능 여행안내 서비스 실시〉

• 개선배경

-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며, 2019년 전국 지자체 관광 경쟁력 평가 시, 경기도 내 최우수 지자체로 관광안내 수요가 많음
- 평일 근무시간에만 관광안내가 가능하고, 관광안내 전담인력이 없어 정확한 안내서비스 제공에 한계, 관광안내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

▶ 상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근무시간에만 관광안내 가능 - 관광데이터 수집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24시간 상시 관광안내 가능 - 관광객 질문 데이터 활용 관광정책 수립

○ 파주시 관광과, 업무관련 ‘혁신동아리’ 구성 : 2020. 1. 6.

- 동아리명 : ‘자유로운 여행 파주’
- 주 제 : 관광활성화 및 연계 콘텐츠 개선방안 연구
- 구성/활동 : 관광과 직원 6명 / ‘20년 상반기 7회 모임, 약 24개 관광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 시간·장소 상관없이 관광안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관광안내 시스템 개발, 관광정보 접근성·편의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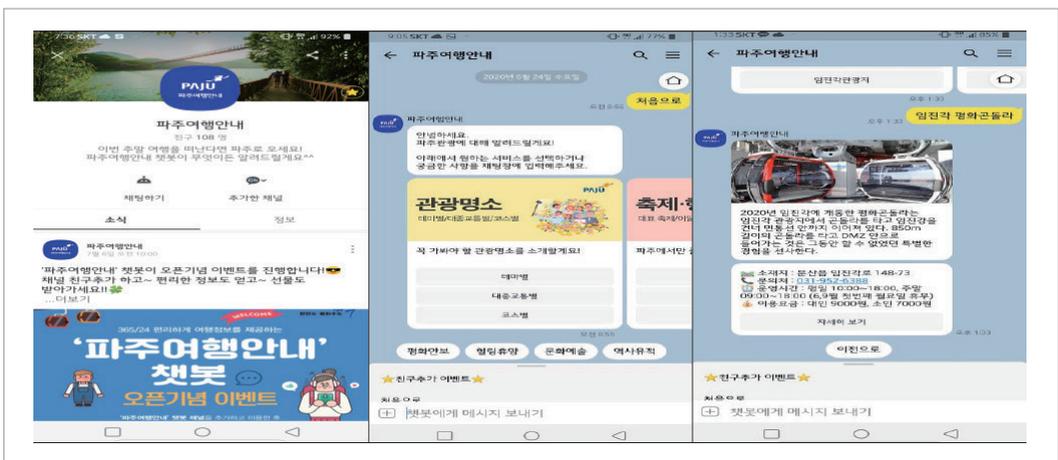
○ 추진일정

- 2020. 2.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20. 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완료(경기도)
- 2020. 4. 챗봇 개발 용역 계약
- 2020. 6. 챗봇 개발 완료
- 2020. 7. 챗봇 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 24시간 365일 가능한 상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 ① 선택형 관광 안내 : 주제별(관광/축제/음식 등) 105개 시나리오 구성
 - * 관광명소(테마별, 대중교통별, 코스별), 축제행사(대표축제, 공연전시, 이달의 행사), 음식·숙박·쇼핑, 관광관련 신청·예약·문의 등 선택형 버튼
 -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관광·문화 관련 부서와 협업
 - ② 자연어 상담 : 관광지 고유명사 등 기본질문 120개, 관련질문 약 600개 답변 구성
 -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AI 모니터링을 통한 업데이트

• 개선효과

- 서비스 개시이후 약 4개월(7.1.~11.11.) 동안 사용자수 1,128명(카카오채널 712, 홈페이지 416)
 - 자연어 질문 1,010건, 조회 1,675건 등
- 365일/24시간 상시 관광안내를 통한 관광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관광 정보 검색 데이터 수집을 통해 관광정책 수립에 적용
 - 방문자 분석, 자주하는 질문, 시간대별 방문자 수, 매체별 방문자, 이용시간 등 분석을 통한 시기적절한 관광정보 제공
- 단순·반복적인 관광정보 문의에 대한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언택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도시개발과(031-940-4711)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 개선배경

- 통일동산은 1990년대 국내 최대 안보관광지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택지지구의 급속한 개발과 정책 변화로 다수의 미개발지 발생
- 개발수요 부족 및 신규 콘텐츠 부재로 매년 이용객 감소
- ▶ ‘파주 통일동산’ 활성화를 위한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도입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1990년대 이후 장기 미개발지	- 아시아 최대 규모 CJ ENM 콘텐츠월드 유치

□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 통일동산 내
- 면 적 : 21만7천㎡
- 사업기간 : 2019 ~ 2021
- 투자규모 : 3,200억원
- 사업규모 : 축구장 32개규모
 - 14개 대단위 스튜디오
 - AR/VR 관광체험시설 등



- 적극적인 규제완화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국내최대 미디어기업 CJ ENM의 민간 투자사업 유치
- LH 토지매각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해결
 - LH와 시행자간 갈등을 행정력 기반의 중재안을 제시·협약하여 사업실현
- 단순 방송스튜디오에서 콘텐츠월드로 개발계획 구상·수립
 - 지자체-사업시행자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최초 콘텐츠 기반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도입
- 신속·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단기간 내 26일 심의까지 통과
 - 사전과업 일괄착수 및 역공정계획 수립으로 부실우려 해소

- 법률자문 등 발빠른 대처로 사업 안착
 - 토지매각에 대한 특혜시비에 대하여 법적 검토의견(자문) 제시(LH 이해설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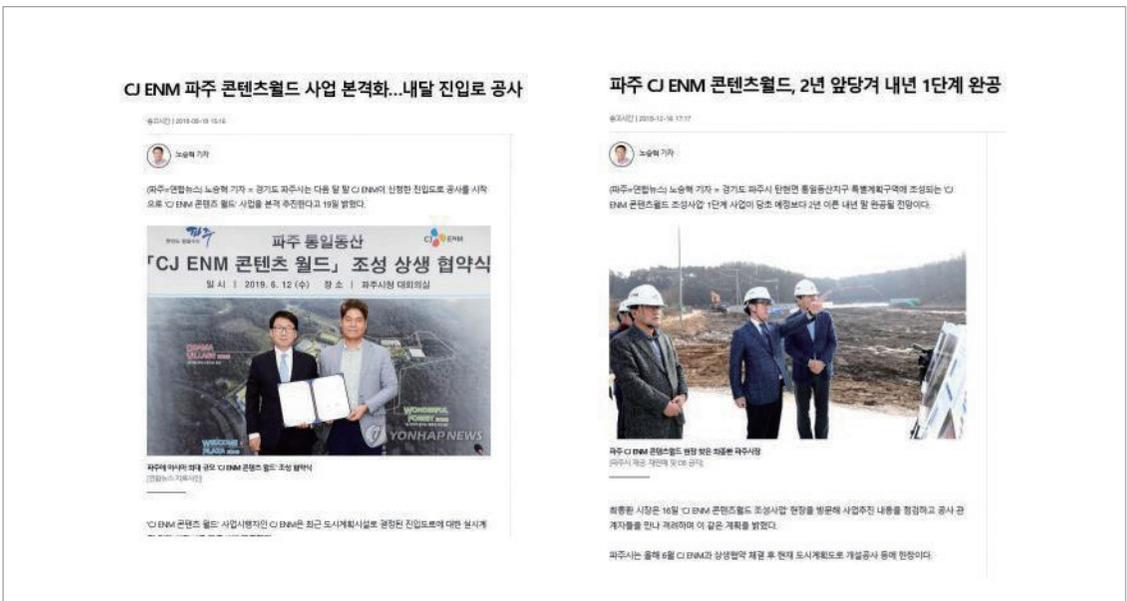
• 개선효과

-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파주 통일동산' 활성화

→ 연간 120만명의 관광수요 창출. 향후 헤이리문화지구, 경기도 체인지업캠퍼스, 국가시설과 연계한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 콘텐츠월드 조성·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콘텐츠관련 4차산업 청년일자리 21,700개 창출



과주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 상생협약

과주시와 주식회사 씨제이엔엠(이하 CJ ENM)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과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과주시와 CJ ENM은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인프라를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력내용) 과주시와 CJ ENM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 및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상생 협력한다.

제3조(역할분담) 과주시와 CJ ENM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과주시는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본 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무와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2. CJ ENM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인근 문화지구와의 문화협력, 지역 콘텐츠 업체와의 상생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과주시와 CJ ENM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기로 한다.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019년 6월 12일


과주시장
최종환


CJ ENM 대표
허민희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지 경기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규제개혁담당관

편집제작 규제개혁담당관

디자인·인쇄 경인인쇄사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Tel. 031-8008-4129 Fax. 031-8008-6719
www.gg.go.kr